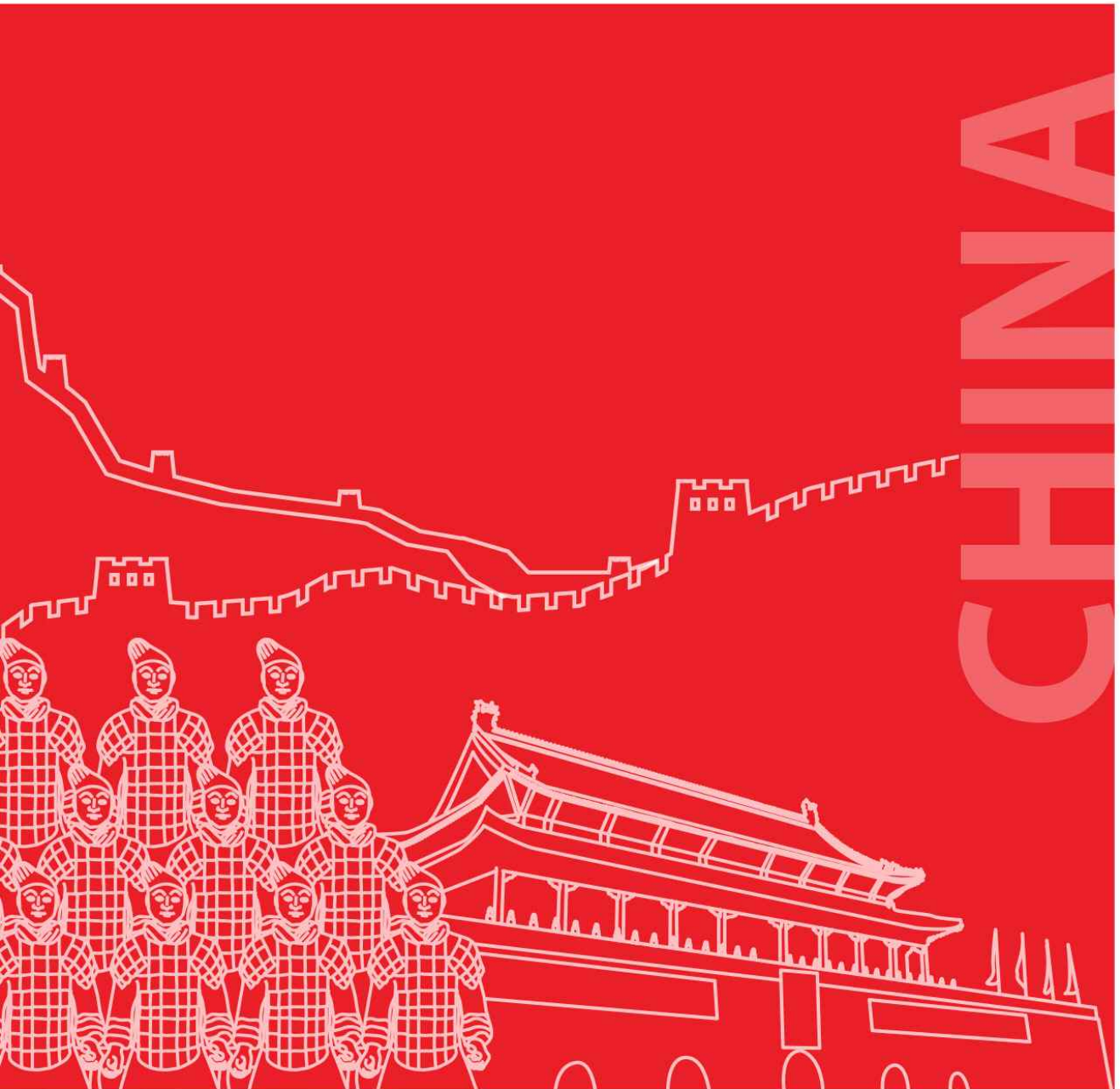


2016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2016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 들어가는 말 ❧

최근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늘 주목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68%에 달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국의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통관·검역 및 위생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물류비용 등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6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각종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담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시장 개척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수시로 수출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개정사항은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사이트인 www.kati.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2016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제1장 시장개요	1
제1절 대중 수출실적	1
제2절 시장여건	2
제3절 소비트렌드	3
제4절 최근 동향	5
제2장 통관제도	10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0
제2절 수입 통관절차	23
제3장 검역제도	29
제1절 검역제도 일반	29
제2절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50
제3절 육류제품 검역	53
제4절 수산물 검역	56
제5절 신선과일 검역	58
제6절 유제품 검역	63
제7절 절임채소 검역	72
제8절 곡물 검역	74
제9절 기타 법규 및 주요 공고	78
제4장 라벨링제도	93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93
제2절 라벨 표기방법	99
제3절 라벨링 사례	127
제5장 통관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129
제1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129
제2절 통관문제 사유분석	132
제3절 대응방안	133
제4절 참고자료	139
제5절 2016년 통관문제사례 목록	142
제6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148
제1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148
제2절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152
제3절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156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대중 수출실적

1. 한국 농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	807,575	987,143	947,296	1,047,331	947,929	1,096,987
수입	6,404,384	4,784,019	6,347,582	4,438,292	6,672,043	4,425,134

자료 : 농수산물수출자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 제외

2. 최근 3개년 수출 상위 5품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위	자당	104,797	조제분유	93,974	조제분유	104,921
2 위	조제분유	75,405	자당	87,835	자당	98,381
3 위	혼합조제식료품	70,426	혼합조제식료품	79,368	혼합조제식료품	89,774
4 위	커피조제품	53,785	판지	66,422	라면	75,328
5 위	기타베이커리제품	50,075	기타베이커리제품	61,596	판지	68,221

자료 : 농수산물수출자원정보(KATI-AG코드 기준), 수산물 제외

1. 내수 중심의 중고속 성장추세 유지

- ❖ 정부의 새로운 경제기조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및 기업부채 증가, 생산설비 과잉 등으로 2016년 GDP 성장률은 6.7%
 - 신창타이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5월 허난성에서 최초 언급

2. '16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른 영유아 식품시장 확대

- ❖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라 영유아 식품 소비인구 확대
- ❖ '16년 중국 출생인구 1,846만명, 전년대비 11.5% ↑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발표)

3. 한중 FTA 발표('15.12.20)에 따른 한국산 식품 수입관세 인하

- ❖ '15년 1차 관세인하에 이어 '16년 2차 관세인하(단계적) 시행
 - 관세 '15년 철폐(과실주스, 파스타, 천연꿀 등)
 - 관세 '20년 철폐(김치, 면류, 커피조제품, 발표주, 무알콜음료 등)

4. 개정 식품안전법('15.10.1) 시행에 따른 수입·통관 엄격화

- ❖ 하위 법령인 식품안전 실시조례, 관리방법 등의 개정 및 엄격 적용

1. 온라인 구매 생활화

- ❖ B2B, B2C 외에 O2O 등 온라인 식품 구매패턴 세분화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으로 상품,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오프라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마케팅 (2015년 O2O 시장규모는 4,655억 위안, 전년대비 55% 성장, 산업연구원 발표)
- ❖ 짧은 배송기간과 저렴한 가격으로 번들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

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레저식품(간편식) 인기

- ❖ 도시를 중심으로 20~30대 1인 거주가구 증가(약 2억명)
 - 전체 인구 중 싱글족 인구비율 증가추세: 1990년 6% → 2013년 14.6%(중국 민정국)
- ❖ 도시지역 월세 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베이커리, 음료, 과자, 면류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및 배달음식 소비 확대
 - 즉석식품 시장규모 : '12년 2000억 위엔 → '15년 5300억 위엔(165% ↑)
 - 인터넷 음식배달 시장규모 : '11년 217억 위엔 → '15 1250억 위엔(아이미디어리서치)

3. 영유아 식품시장 성장 및 수입산 선호

- ❖ 자녀 먹거리 중시 풍조, 두 자녀 정책 발표로 영유아(만 0~3세) 식품 소비 증가
- ❖ 수입산 분유, 간식제품, 이유식, 건강보조제, 유아용 음료·과자 등 구매 증가
 - 중국 분유 시장규모 : '12년 563억 위엔 → '13년 600억 → '14년 700억
 - 중국 영유아 보조식품 시장규모 : '10년 50.5억 위엔 → '12년 74.4억 → '14년 98.6억

4. 고령화 시대 도래로 중·노년층 건강식품 소비증가

- ❖ 중국인 평균수명이 76.3세('16년 기준)까지 늘어나는 등 고령화로 중·노년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소비시장 확대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국 평균수명을 2030년까지 79세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건강중국 2030 계획강요'를 발표('16.10)
 - 중국 보건식품시장 규모는 '14년 1,610억 위엔이며 '20년 5,000억 위엔 돌파 예상 (중국 산업정보망 조사분석보고)
- ❖ 중·노년층 건강식품(전용 분유, 건강보조제 등) 출시 및 전용 쇼핑몰 등장
 - 네슬레 중노년 분유(850g/75위엔), 구기자 차(200g/68위엔)

1. 품목별 동향

가. 한국산 설탕 세이프 가드 조치 조사 착수

- ❖ 중국 정부당국은 2016년 9월부터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무역 장벽임
- ❖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기존 쿼터제 내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125% 보다 더 높은 160%까지 올라갈 수 있음

나. 인삼 비관세장벽 조치 증가

- ❖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국 내 인삼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 조치를 증가할 것으로 발표함
- ❖ 현재 중국에서는 4~5년근에 대한 분류군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나, 6년근 인삼은 의약품 수준의 약재,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제도

- ❖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분유 생산 업체는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들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중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 등록 개수는 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0~6개월을 1단계, 6~12개월을 2단계, 12~18개월을 3단계로 구분함

- ❖ 연구개발, 생산, 검역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유통이 가능함
 - 해당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 기재 엄금
 - 생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함
- ❖ 분유조제법 등록 완료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라벨 및 설명서 상에 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등록번호 : YP+연도+제품번호
- ❖ 2018년 1월 1일 전 허가받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수출하는 조제분유는 유통기한까지 판매가능함

라. 新보건식품 정책 <보건식품 허가 및 등록 관리방법>

-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2호로 공표되었으며, 2016년 7월부터 시행됨
- ❖ 중국 위생허가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취득 비용 불필요
 - 외국 보건 식품 브랜드는 중국 위생허가 CFDA 취득을 위해 50만~100만 위안 가량의 등록비용을 부담해야했으나,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존과 같은 등록비용이 불필요해짐
- ❖ 수입되는 보건 식품의 원료가 허가 원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함
 - 원료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3년간의 심사를 통해 별도 허가가 필요
 - 원료 리스트:
 -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철분,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 A, C, D, E, B1, B2, B6, B12, K, 니코틴산, 엽산, 비오틴, 콜린, 판토텐산 등
- ❖ OEM 생산 제품 금지 및 과대광고가 금지됨
 -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허가되지 않으며, 보건 식품 명칭에 허구, 과장된 단어와 직간접적으로 예방, 치료 기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함

2. 지역별 동향

가. 광서성 수구검사검역국(广西水口检验检疫局) 수입 견과류 품질 검사 강화

- ❖ 광서성 수구검사검역국은 2016년 11월부터 수입 견과류 품질 검사 강화를 시행하여 샘플링을 통한 실험실 검사 추가, 견과류 식품 리스크 관리, 추적성 관리, 소비자 식품 안전 의식 교육 등을 실시함
- ❖ 이전 견과류 식품은 현장 관능검사로만 진행하였지만 강화 이후 GB 19300-2014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관능검사를 진행함
 - 맛: 쉰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껍질이 있는 견과: 곰팡이/ $\% \leq 2.0$, 껍질이 없는 견과: 곰팡이/ $\% \leq 0.5$
 - 이물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
- ❖ 과거 관련 데이터가 분산되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분류 검사 실행을 통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검사 합격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스크 등급을 낮춰주거나 샘플링 검사 비율과 검사 항목을 조정함
 - 처음 수입한 식품이나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의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과 빈도수를 높여 더욱 엄격하게 검사함
- ❖ 정기적으로 수입 식품 경영자와 제품 판매 기록 현황을 조사하여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조사함. 이는 만일 수입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의 시장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임
- ❖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

나. 산시성 수입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 발표

- ❖ 산시성 인민정부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수입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산시성 주요제품 추적 체계 건설 실시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밝힘
- ❖ 본 방안은 수입 식품이 많이 유입되는 곳을 위주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될 전망이다

- ❖ 중국 광둥성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광둥성의 수출입 상품의 품질 합격률이 4배 증가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 ❖ 신규 방안의 주요 특징들로는 수입 식품 전 과정의 추적화, 수입 분유 및 와인의 중점적인 감독, 수출입 등록제, CIQ자원(资源) 도입, 수입식품의 품질 안전을 위한 추적 리콜제도 등이 있음

다. 천진 출입국검역국, 수입 수산물 검증·검역 조건사항 강화

- ❖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정식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검증검역서 미비, 검역국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증명서, 검역국 확인 증명서 샘플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함
- ❖ 검역국이 수입 수산물 해외 생산 기업에 대해 등록관리하고, 공식사이트에 등록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함. 이에 수입 수산물 생산가공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기업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됨
- ❖ 처음 수입된 제품의 품질안전과 식품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세우는 시스템을 갖추. 이에 검역 결과가 불합격으로 중국 수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거부됨
- ❖ 식품 안전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및 기타 양식 수산물 등에 대해서 심사 및 비준 제도를 실시함
 - 상기 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서 체결 전, 검역 심사 비준절차를 밟고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 ❖ 제품이 반송 또는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입검증 심사 기준을 거쳐야 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등록이 필요한 수산물 생산기업이 중국 검역국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수출국의 담당 검역국이 발행한 정식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인체 안전 및 환경보호 부문과 관련해서 불합격된 경우

3. 정책 동향

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간편화

- ❖ 중국 해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수출입 기업들의 보다 쉽고 빠른 통관 심사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편화를 시행함
- ❖ CO-PASS 시스템에 따라 한·중 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CO-PASS 시스템이란 한·중 세관이 실시간으로 전자 문건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교환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FTA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통보하는 시스템임
- ❖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세관에 도착할 경우 창고료, 물류비 등을 추가 지불해야 했으나, 본 시스템 시행으로 연간 약 6,245억 원이 절약 될 수 있음
- ❖ 기존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검증의뢰를 한 유형은 인장 불일치, 양식 불일치 등의 형식적 오류였음. CO-PASS 도입으로 전자 데이터 심사가 가능해져 원산지증명서 형식 관련 검증 요청이 감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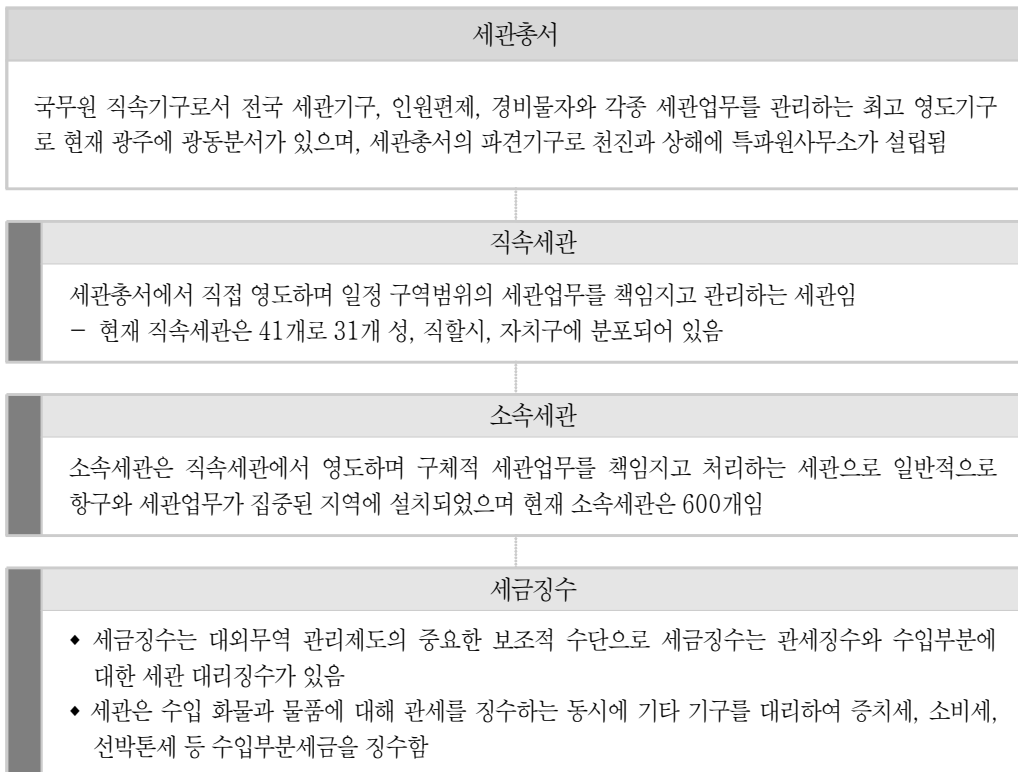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통관제도 일반

1. 관리체계

가. 세관 관리체계



나. 관리 법률체계

구분	분류	주요법규
1	<p>법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세관법 -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2	<p>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저작권법실시조례 - 상표법실시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보장조치조례 - 반보조조례 - 반덤핑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 선박톤세감행조례 - 외환관리조례
3	<p>부서규정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화물자동차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집행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신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차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2. 수입관리제도(법률 & 행정법규)

가. 국가 법률

1) 대외무역법(국가주석령 15호, 2004.07.01)

□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화물 &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기구에 서류등록(备案) 등기(登记). 단 등록 등기가 필요 없다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9조)

❖ 국영무역업체 관리

- 부분 화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 권한을 수여받은 기업에서만 수출입 경영. 단 국가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부분 할당량을 권한이 없는 기업에 허용한 경우 제외(11조)

❖ 대외무역업무의 위탁 및 대리

-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 대리(대외무역법 12조항)

□ 화물 & 기술 수출입 관리

❖ 수출입허가

-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 제외(14조)
-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상황 모니터링수요차원에서 부분 자유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 실행, 자동허가 실행 수출입화물은 세관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신청(15조)

■ 2016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2000 10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2 2000 10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냉동
	0206 2100 00 0206 2200 00 0206 2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돼지고기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3 2190 10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냉동
	0206 4100 00 0206 49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양고기	0204 1000 00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3000 00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냉동 면양류

품목	HS코드	비고
양고기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닭고기	0207 1200 00 0207 1411 00 0207 1419 00	냉동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냉동 내장 등 기타부위
신선우유	0401 1000 00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00 10	영유아용 조제분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1507 9000 00	대두유
	1509 1000 00 1509 9000 00 1510 0000 00	올리브유
	1511 1000 00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팜유

품목	HS코드	비고
식용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카사바	0714 1010 00 0714 1020 00 0714 1030 00	
보리	1003 1000 00 1003 9000 00	
수수(고량)	1007 1000 00 1007 9000 00	
옥수수 주조	2303 3000 10	
설탕	1701 1200 90 1701 1300 90 1701 1400 90 1701 9100 90 1701 9910 90 1701 9920 90 1701 9990 90	
담배	2401 1010 00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담배
담배	4813 1000 00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자료 : <http://www.mofcom.gov.cn/article/b/g/201603/20160301271435.shtml>

❖ 수출입 제한화물의 관리

-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配額), 허가증(許可証)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행
- 쿼터 및 허가증관리를 하는 화물, 기술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주관 부서에서 직접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허가를 해야 함
- 국가는 부분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關稅配額)관리를 실행(19조)

❖ 상품검사

-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정제도 실행,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인증, 검사, 검역 및 원산지관리 진행(21/22조)

2) 세관법(국가주석령 35호, 2000.07.08)

□ 수입화물 관리

❖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수입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 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 징수(24조)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한 정당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26조)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개봉, 재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총서 허가 시 검사 면제(28조)

❖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수입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받을 수 있음(35조)

❖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 실행(40조)
-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 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41/42조)

□ 관세

❖ 관세지급필가격(完税价格)의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거래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사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55조)

나. 국무원 행정법규

1) 화물수출입관리조례(국무원령 332호, 2002.01.01실시)

□ 수입제한 화물

- ❖ 국가에서 수량제한을 규정한 수입제한화물은 쿼터(配額)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许可证)관리를 실행, 관세쿼터(关税配額)관리 수입화물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집행(관세쿼터관리화물 참조)(11조)

■ 2016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1	밀	963.6	9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 실적에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2014년 또는 2015년 밀 사용량 10만 톤 이상의 밀가루 생산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밀가루 사용량 5만 톤 이상의 식품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상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 혹은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2	옥수수	720	6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2014년 또는 2015년 옥수수 사용량 5만 톤 이상의 사료 생산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옥수수 사용량 15만 톤 이상의 기타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상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3	쌀	532 (장립: 266/ 중단립:2 66)	50%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는 2014년 또는 2015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4) 2014년 또는 2015년 쌀 사용량 3만 톤 이상의 식품 생산업체 5)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업체 소재지 상무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4	목화	89.4	33%	1) 국영무역업체 2) 2015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입 대행 미포함) 3)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5	설탕	194.5	7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5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600톤, 연간 매출액≥4.5억 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6	양모	28.7		1) 2015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신설 가능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 통과 업체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시행방법”, “2015년 양모, 섬수모 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5년 양모, 섬수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7	섬수모	8.0		

자료 : <http://www.mofcom.gov.cn>

□ 관세쿼터관리 화물

■ 2016년 관세쿼터관리 농산물 수입관세 ■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1	밀	10011100 10011900 10019100 10019900	1	65	180
2	옥수수	10051000 10059000	1	20	180
				65	
3	쌀	10061011 10061019 10061091 10061099 10062010 10062090 10063010 10063090 10064010 10064090	1	65	180
4	목화	52010000 52030000	1	40	125
5	설탕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15	50	125
6	양모	5101110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1	38	50
7	섬수모	51051000 51052100 51052900	3	38	50

자료 :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관리

❖ 국영무역관리

- 국가는 부분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며 국영무역관리화물 목록과 국영무역기업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함께 제정 및 발표(45/46조)

▣ 국영무역관리 농산물목록 ▣

No	품목	HS코드
1	밀관련	10011000 / 10019010 / 10019090 / 11010000 / 11031100 / 11032100
2	옥수수관련	10051000 / 10059000 / 11022000 / 11031300 / 11042300
3	쌀관련	10061011 / 10061019 / 10061091 / 10061099 / 10062010 / 10062090 10063010 / 10063090 / 10064010 / 10064090 / 11023010 / 11023090 11031921 / 11031929
4	대두유	15071000 / 15079000
5	팜유	15111000 / 15119010 / 15119090
6	겨자유	15141010 / 15141090 / 15149110 / 15149190 / 15149900
7	설탕	17011100 / 17011200 / 17019100 / 17019910 / 17019920 / 17019990
8	담배	24011010 / 24011090 / 24012010 / 24012090 / 24013000 / 24021000 24022000 / 24029000 / 24031000 / 24039100 / 24039900 / 48131000 48132000 / 48139000 / 55020010 / 56012210
9	목화	52010000 / 52030000

자료 : <http://www.mofcom.gov.cn>

2) 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령 392호, 2004.01.01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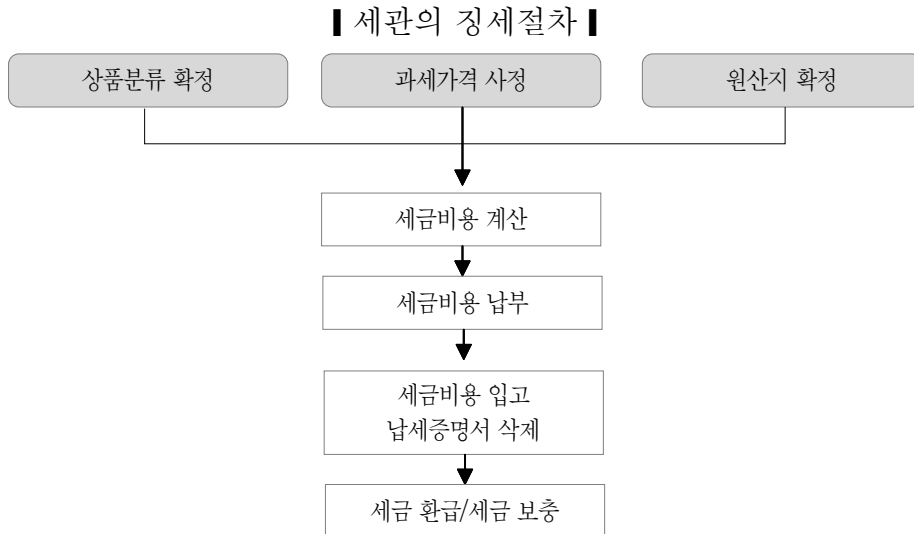
□ 2016년 관세실시방안

- ❖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5.12월 <2016 관세실시방안>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실시
- ❖ 냉동대구 등 품목에 대하여 잠정세율 실시
- ❖ 한국산 대중 수출관련 품목은 관세협정 실시

3. 세금 징수

가. 징세절차

-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나.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종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종가관세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관세	수입관세(종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종량)=화물수량×잠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다. 수입 소비세 계산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text{소비세} = \text{징세가격} \times \text{소비세 세율}$ $\text{징세가격} = (\text{과세가격} + \text{관세}) / (1 - \text{소비세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종량징수	$\text{소비세} = \text{소비품 수량} \times \text{소비세 세율}$	
복합징수	$\text{소비세} = \text{증가 소비세} + \text{종량 소비세}$	

라. 수입 증치세 계산

구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text{증치세} = \text{징세가격} \times \text{증치세 세율}$ $\text{징세가격} = \text{과세가격} + \text{관세율} + \text{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수입 통관절차

1.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가. 화물별 수입 통관절차

구분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수입화물	/	수입신고 세금비용 납부 검사 및 통과 화물 수령	/
보세수입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심의삭제
특정감면세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입국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사건 취소

나. 일반 수입화물의 세관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② 세관 서류심사진행 ③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④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⑤ 신청인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세관 화물검사 ⑦ 세관 화물통과 ⑧ 신청인 화물수령 ⑨ 세관 증명서 발급
---	---

다. 수입화물의 통관관련서류

기본서류	특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증서 -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 가공무역등록매뉴얼 - 감면세증명 - 외환송금심사증서 - 담보증서 등

2. 수입식품의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가. 수입식품의 통관절차

1) 검사검역 1단계

-
- ① 신청인 검사검역신고
 - ② 수출입검사검역국(CIQ,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s) 수입화물통관단 발행 / 수출입 검사검역기구
-

2) 통관단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② 세관 서류심사진행 ③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④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⑤ 신청인 세금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세관 화물검사 ⑦ 세관 화물통과 ⑧ 신청인 화물수령 ⑨ 세관 증명서 발급 |
|---|---|
-

3) 검사검역 2단계

-
- ①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샘플검사
 - ②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위생검역증서 발행
-

나.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관련 필요서류

해당기관	필요서류
수출입검사검역국 (CI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Bill of Landing(선사 발행)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수출업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수출업체) - 무역계약서/Trade Contract(수출, 수입업체)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대한상공회의소) -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식약처) * (신선)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농림축산검역본부) - 증문라벨(증문 간체)
해관(中国海关) (CUST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Bill of Landing(선사 발행)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수출업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수출업체) - 무역계약서/Trade Contract(수출, 수입업체) - 수입화물통관단(수출입검사검역국)

3. 품목별 수입식품의 통관조건 및 절차

가. 육제품

-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 통관조건 : 7A

Code	명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소, 돼지, 양, 닭에만 적용

-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에서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나. 수산동물

-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11년 총국령 제135호령<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근거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대중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 및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호에 근거 양식 수산동물 경우에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 통관조건 : AU

Code	명칭	발급기구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l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 ※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 ※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는 농업부에서 발급한 합병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추가

다. 채소 & 과일류

- ❖ 검역조건: 신선과일 및 토마토, 가지, 고추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 통관조건 : A

Code	명칭	발급기구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라. 식량 & 가공품

- ❖ 검역조건
 - 식량은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은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 <수입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식물제품>에 근거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 ❖ 통관조건 : At

Code	명칭	발급기구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t	관세쿼터 증명(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 t 관세쿼터 증명은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에만 적용

-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은 통관서류에 상무부에서 발급한 관세쿼터 증명 추가

마. 유제품(조제분유 포함)

- ❖ 검역조건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Attached Health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exported to China from Republic of Korea>, 신선우유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수입동식물검사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 통관조건 : 7A

Code	명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에만 적용

-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는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바. 약재 & 기능성 식품(대표 인삼류)

- ❖ 검역조건(약재) :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인삼(홍삼, 백삼 등)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를 신청하여 취득(수입약재는 통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검사하여 수입약품통관단 발급)
- ❖ 검역조건(기능성 식품) : 중국위생부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첨부1 참고)*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수입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취득
- ❖ 통관조건 : AQ

Code	명칭	발급기구
A	수입화물통관단(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Q	수입약품통관당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Q 수입약품통관당은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에만 적용

❖ 통관절차: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며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는 지정 세관(약품수입 허가세관 & 약재수입 허가세관, 첨부 2 참고*)을 통하여 수입

<첨부 1> 보건의약품 사용가능 원료목록

인삼(人參), 인삼엽(人參葉), 인삼열매(人參果), 전칠삼(三七), 토복령(土茯苓), 영경귀(大蓟), 여정실(女貞子), 산수유(山茱萸), 우슬(川牛膝), 천패모(川贝母), 천궁(川芎), 마녹태(马鹿胎), 마녹용(马鹿茸), 마녹골(马鹿骨), 단삼(丹参), 오가피(五加皮), 오미자(五味子), 승마(升麻), 호라지쫘(天门冬), 천마(天麻), 들별꽃(太子参), 파극천(巴戟天), 목향(木香), 속새(木贼), 우방자(牛蒡子), 우방근(牛蒡根), 질경이씨(车前子), 질경이(车前草), 북사삼(北沙参), 평패모(平贝母), 현삼(玄参), 생지황(生地黄), 생하수오(生何首乌), 자란(白及), 백출(白术), 백작약뿌리(白芍), 카다멈(白豆蔻), 석결명(石决明), 석곡(石斛(需提供可使用证明)), 지골피(地骨皮), 당귀(当归), 죽여(竹茹), 홍화(红花), 바위들꽃(红景天), 화기삼(西洋参), 오수유(吴茱萸), 우슬(怀牛膝), 두충나무(杜仲), 두중엽(杜仲叶), 사원자(沙苑子), 목단피(牡丹皮), 알로에(芦荟), 삼주(苍术), 보골지(补骨脂), 가자나무(诃子), 적작(赤芍), 영신초(远志), 맥문동(麦门冬), 구갑(龟甲), 패란(佩兰), 측백엽(侧柏叶), 대황(制大黄), 제하수오(制何首乌), 자오가(刺五加), 자매과(刺玫果), 택란(泽兰), 택사(泽泻), 장미(玫瑰花), 낙신화(玫瑰茄), 지모(知母), 라포마(罗布麻), 고정다(苦丁茶), 금교맥(金荞麦), 금앵자(金樱子), 청피(青皮), 후박(厚朴), 후박화(厚朴花), 강황(姜黄), 익은구연 및 탱자를 말린 것(枳壳), 덜익은 구연이나 탱자(枳实), 측백나무 열매 씨(柏子仁), 진주(珍珠), 고교람(绞股蓝), 호호파(胡芦巴), 천초(茜草), 필발(葎苳), 구채자(韭菜子), 수오등(首乌藤), 향부(香附), 골쇄보(骨碎补), 당삼(党参), 상백피(桑白皮), 상지(桑枝), 절패모(浙贝母), 익모초(益母草), 적설초(积雪草), 음양곽(淫羊藿), 토사자(菟丝子), 야국화(野菊花), 은행엽(银杏叶), 황기(黄芪), 호북패모(湖北贝母), 번사엽(番泻叶), 합개(蛤蚧), 월귤(越橘), 괴각(槐实), 포황(蒲黄), 남가새(蒺藜), 밀랍(蜂胶), 산각(酸角), 묵한련(墨旱莲), 숙대황(熟大黄), 숙지황(熟地黄), 별갑(鳖甲)

<첨부 2> 약품수입 허가세관 & 약재수입 허가세관

구분	세관
약품수입허가세관 (19)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Ningbo(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무한(武汉), 광주(广州), 심천(深圳), 주해(珠海), 해구(海口), 중경(重庆), 성도(成都), 서안(西安), 남녕(南宁)
약재수입허가변경세관 (19)	흑하(黑河), 동녕(东宁), 집안(集安), 장백(长白), 도문(图门), 삼합(三合), 이련호특(二连浩特), 만주리(满洲里), 빙상(凭祥), 동흥(东兴), 용방(龙邦), 서리(瑞丽), 천보(天保), 경홍(景洪), 하구(河口), 아라산구(阿拉山口), 콕이과사(霍尔果斯), 토이소트(吐尔尕特), 홍기랍보(红其拉普), 장목(樟木)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 일반

1. 관리체계

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관리체계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사,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식품안전,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집법기능을 행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임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국가질검총국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35개를 두고 있음
 -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국은 관할구역 수출입상품의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상품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기관별 감독관리의 역할 ■

구분	세부내용
출입국검사검역기구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소속 - 출입국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수출입상품검사의 주관부서 - 법정검사검역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사검역만 책임
세관	- 세관총서에 소속 -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징세와 합법성 감독을 진행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	- 국내 제품품질, 표준계량과 특종설비 등의 감독관리를 책임

나. 출입국검사검역 주요업무

업무분류	업 무 내 용
수출입상품 검사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출입국상품과 기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상품에 대한 검사
수입상품 인증관리	국가에서 인류건강과 동식물건강 및 환경보호와 공공안전과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인증제도
입국폐기물원료 선적전의 검사	국가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폐기물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
수출상품 품질허가	국가에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
식품위생 감독검사	수입식품(음료, 주류, 설탕류를 포함), 수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 공구와 설비에 대한 위생감독검사
동식물 검역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 용기, 포장물, 깔개재료, 동식물 전염병지역의 운송공구, 입국시 해제한 폐기 선박, 식물 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재료에 대한 검역허가제도
출국상품 운송포장 검사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운송포장에 대한 성능검사
외상투자재산 감정	외상투자 재산 감정은 상품의 가치감정, 손실감정,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
화물 적재와 파손 감정	선박과 컨테이너로 식량과 식용유식품, 냉동품 등 부식되기 쉬운 식품을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감정
위생검역과 처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컨테이너, 수하물, 화물, 우송물 등에 대한 의학검사와 위생검사
섭외검사검역감정 심사절차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수출입상품 검사, 감정, 인증회사에 대한 심사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합작	WTO/TBT협약의서와 SPS협약의서 자본업무, UN, APCE과 ASEM 등 국제조직과의 연락업무, 정부 간 검사검역 합작협약의서, 인증인가 합작협약의서, 검사검역 협약의서 집행의정서 등의 체결과 실시를 책임

■ 검사검역별 특징 ■

업무	항목	세부내역
수출입상품검사	법률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 -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검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 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검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검사 - 계약검사 - 공정감정 - 위탁검사
출입국동식물검역	법률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검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검역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사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 출입국 운송공구 검역
국경위생검역	법률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검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 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검사
	검역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검역 - 국경 전염병 검사 - 출입국 위생감독

다. 법률체계

- ❖ 중국의 검역관리제도는 국가주석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진수출입식물검역법> 등 국가법, 국무원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주관부서 령(令)으로 발표되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출입육류검사검역관리방법>,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 검역관리제도의 법률체제 ■

구분	분류	주요법규
1	법 른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 -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식품안전법 - 국경위생검역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 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사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사료사료첨가제검사검역관리방법 - 수출입검사검역차압, 압수관리규정 - 수출입상품수량중량검사감정관리방법 - 식품리콜관리규정 - 수입상품과손검사감정관리방법 - 식품라벨관리규정 - 신선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 수입화물목재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 수출입유전자변형제품검사검역관리방법 - 수출입검사검역신고규정

2. 검사검역 제도

가. 국가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국가주석령 67호, 2002.04.28)

□ 총 칙

- ❖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사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주관. 국가상검부서가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이하 상검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사사업 관리(2조)
- ❖ 수출입상품검사는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전보호를 원칙으로 국가상검부서에서 검사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조정하여 발표(4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수출입화물통관단), B(출경화물통관단) 표기 품목
-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은 판매, 사용 및 수출하지 못함.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사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화인 혹은 발송인의 신청하에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검사면제(5조)
- ❖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수출입상품검사는 목록 내 수록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합격여부 판정절차는 샘플채취, 검사와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보증, 등록, 인가와 허가 등(6조)
-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검사하며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한 국외관련 표준에 따라 검사(7조)

□ 수입상품 검사

- ❖ 상검기구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통관신고지역의 상검기구에 검사 신고. 세관은 상검기구에서 발급한 화물통관증명(수입화물통관단)으로 검사 및 통관허가(11조)

- ❖ 상검기구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함.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서 발급(12조)
- ❖ 본 법이 규정한 상검기구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이 수입상품의 품질 불합격 혹은 파손, 부족 등으로 대외 클레임시에는 상검기구에 검사 및 증명 발급을 신청(13조)

□ 감독관리

- ❖ 상검기구는 상검기구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 외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 실시(19조)
- ❖ 수출입화물의 수령인, 발송인을 대리하여 검사수속을 받는 대리인은 상검기구에 등록(注册登記). 검사신고 대리시 위탁서 제출(21조)
- ❖ 상검기구는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 증서확인관리 진행, 화물과 증서의 일치여부 및 증서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26조)

2)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국가주석령 53호, 1991.10.30)

□ 총 칙

- ❖ 국무원은 동식물검역기구(이하 국가동식물검역기구)를 설립 전국 수출입 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 국가동식물검역기구가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수출입 동식물검역을 실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수출입동식물검역사업을 주관(3조)

* 1998년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기존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합병하여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으로 신설 검역업무 총괄, 기존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업무는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에 위생부 위생검역국 업무는 위생검역감독관리사로 이전

- ❖ 국가는 동식물병원체(균종, 독종 포함), 해충,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역병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시체; 토양의 수입을 금지, 과학연구 등 특수상황은 사전신청(5조)

□ 수입검역(进境检疫)

- ❖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종묘 등 기타번식재료 수입은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심사 비준을 받아야함(10조)
- ❖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정, 원조 등으로 수입하는 동식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에 중국 법정 검역요구 명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 동식물검역기구서 발급한 검역증서 첨부토록 명시(11조)
- ❖ 수입동식물, 동물제품의 화물주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무역계약 등으로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12조)
- ❖ 동물을 적재한 운송도구가 세관 도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예방조치로 운송도구에 접근하는 인원, 운송도구와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소독처리(13조)
- ❖ 수입 동식물, 동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은 수입세관에서 검역을 실시. 동식물검역기구의 동의하에 하역. 격리검역대상은 동식물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 검역. 수입세관 검역조건 미달 시 국가동식물검역기구는 지정장소로 운송 검역실시(14조)
- ❖ 수입동물이 검역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물주 혹은 대리인에 아래와 같이 처리토록 통지

■ 검역불합격 처리조치 ■

검출사항	처리사항
1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동일무리의 전반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2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동일무리 전반동물 반품 혹은 기타 지정장소에 격리관찰

- 수입동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불합격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물주 혹은 대리인에게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수입허가(16조)
- ❖ 수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에서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검출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물주 혹은 대리인에게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수입허가(17조)

- ❖ 본 법의 16조항 1~2급 전염병, 기생충과 17조항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목록은 국무
원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 및 발표(18조)
- ❖ 본 법의 18조항이 규정한 목록 외 농, 임, 목, 어업에 엄중한 위험이 있는 기타 병충해
검출 시 수입세관의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화
물주 혹은 대리인에게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한 제품은 수입허가(19조)

나. 국무원 행정법규

1)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국무원령 447호, 2005.08.31)

□ 총 칙

- ❖ 국가품질감독검역검사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주
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검사검역국 및 지사(이하 수출입검사
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사사업 관리(2조)
- ❖ 국가질검총국은 상검법 4조항 규정에 따라 검사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
(이하 목록)을 제정 및 조정 발표(3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수입화물통관단), B(출경화물통관단) 표기 품목
- ❖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목록에 수록된 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입검사검역기
구에서 검사해야한다고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이하 법정검사) 실
시, 법정검사 외 상품은 샘플추출검사(4조)
- ❖ 샘플, 선물, 임시 수출입화물 및 기타 비무역성물품은 검사 면제,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사면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령인, 발송인 혹은 생산기업에서 신청하여 국가질검총국이 심사비
준 후 검사 면제(6조)
- ❖ 법정검사 수출입상품은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서 상검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검사
실시.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의 실수요와 국제표준에 따라 수출입상
품검사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 제정(7조)

- ❖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 검사실시내용은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 적합여부와 품질, 수량, 중량 등 항목(9조)
- ❖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상품과 국가가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증서검사관리 실시, 증서를 확인하고 화물과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10조)

□ 수입상품 검사

- ❖ 법정검사 수입상품 수령인은 무역계약,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서와 관련 비준증서로 세관신고지역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고. 세관 통관허가 후 20일내에 본 조례 18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청.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 수화인은 세관신고지역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증서검사 신청(16조)
- ❖ 법정검사 수입상품 및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수입화물통관단에 의거 세관통관수속 진행(17조)
- ❖ 법정검사 수입상품은 수령인이 검사신고에서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사실시, 대중별 크상품, 쉽게 부패하는 상품, 원료로 사용하는 고체폐기물, 쉽게 파손 손실되는 상품은 하역지에서 검사실시(18조)
- ❖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외 법정검사 수입상품이 검사에서 인체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 불합격 시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제출하여 세관에 서면통지하고 세관은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품수속 진행, 기타항목 불합격 시 수출입검사검역기구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하고 재 검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9조)
- ❖ 법정검사 외 수입상품이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 추출검사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 검증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20조)

□ 감독관리

- ❖ 국가는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注册登记)관리를 실시하며 위생등록을 취득한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있음.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 신청(32조)
- ❖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전에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요구와의 부합여부,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라벨검사증명을 발급받아야 함(34조)

2) 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국무원령 206호, 1997.01.01)

□ 총 칙

■ 검역실시 물품목록 ■ (2조)

1. 수입, 수출, 국경통과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적재용기, 포장물, 바닥재
3. 동식물 역병지역에서 온 운송도구
4. 수입하여 해체한 폐기, 중고선박
5. 법률, 행정법규, 국제조약 혹은 무역계약에 동식물검역을 규정한 기타화물 및 물품

- ❖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수출입동식물검역사업을 주관, 국가동식물검역국은 전국의 수출입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수출입동식물검역을 실시(3조)

□ 검역심사비준

❖ 검역심사비준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 체결 전에 진행

■ 수입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검역심사비준목록 ■

구분	
활 동물	사양, 야생 활 동물, 배태, 정액, 수정란, 종란 및 기타 동물유전물질
식용 동물제품	육류 및 제품(장기 포함, 익혀 만든제품 제외), 알류, 우유
비 식용 동물제품	가죽류, 모류, 뼈 & 발굽 & 각 및 제품, 젤라틴, 누에고치, 동물원성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료용유청분, 어분, 육분, 골분, 육골분, 유지, 혈분, 혈액 등, 동물성분을 함유한 유기비료
과채류	신선과일, 토마토, 가지, 고추
연초류	담뱃잎, 연초편(烟草薄片)
식량류	밀, 옥수수, 벼, 보리, 흑맥, 연맥, 수수 등
두류	대두, 녹두, 완두, 적두, 잠두, 치크콩
서류	감자, 카사바, 고구마 및 가공제품(감자분 제외)
사료류	밀기울, 콩깻묵, 대두박 등
기타류	식물재배매개체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02년 2호공고 & 2004년 111호 공고

■ 수입검역심사비준 조건 ■ (10조)

1.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 중대 동식물역병이 없어야함
2. 중국의 동식물검역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
3.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간 체결한 양자검역협정(협의, 비망록 포함)에 부합

■ 수입검역심사비준 신청자료 ■ (11조)

1.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등록등기증
2.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기업법인영업집조
3. 상무부 비준한 수출입권한 문서, 자격증서 혹은 가공무역 문서
4. 냉동 창고 등록자격증명문서 혹은 등록창고와의 협의서(수입육류)
5. 국내 생산, 가공, 저장기업 등록자격증명, 검역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수입동식물제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고과보고, 신청업체와 사용업체 다른 경우 가공계약, 저장협약 혹은 대리수입협약(소시지 외피, 식용 녹용, 녹각, 식량, 두류 등)
6. 반품원인설명, 반품협의, 수출제반증서(반품회물)

■ 수입검역심사비준 절차 ■ (11조)

1. 신청인 신청표 작성 신청자료와 함께 제출
 2. 직속검사검역국 자료접수하여 5일내 자료보충 요구, 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으로 이송
 3. 수출입식품안전국 최종심사, 온라인으로 <검역허가증> 혹은 <비준 미확취 통지서> 발급
※ 전반 심사비준은 직속검사검역국 신청자료 접수일자로부터 20일내 완성
-

■ 검역심사비준 재신청 상황 ■ (16조)

1. 품종 및 수량 변경시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변경시
 3. 수입세관 변경시
 4. 검역심사비준 기한 초과시
-

□ 수입검역(进境检疫)

- ❖ 국가는 중국으로 동식물제품을 수출하는 국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에 대하여 등록(注册登记)제도 실시(17조)
-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화물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전 혹은 수입 시점에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부류별로 종축, 금 및 정액, 배태 수입은 수입 30일전에 검역신고, 기타동물수입은 수입 15일전에 검역신고,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는 수입 7일전에 검역신고, 동식물성 포장재, 바닥재는 수입 시 검역신고(18조)
- ❖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시 검역신고서, 수출국가 혹은 지역병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검역증서, 산지증서, 무역계약, 신용증,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법에 따라 검역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 검역심사비준서 제출(19조)

■ 현장검역 규정 ■ (조례 22조항)

구분	검역기준
동물	역병의 임상증상검사; 전염병감염 혹은 동물 사체 발견 시 화물주 혹은 대리인의 배합 하에 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처리; 동물의 바닥재, 남은 사료와 배설물은 검역원의 감독하에 화물주 혹은 대리인의 위해제거처리
동물제품	부패 변질현상 및 용기, 포장의 안정여부 검사; 요구에 부합되면 하역을 허락하고 포장 불완전, 용기파손 발견 시 화물주 혹은 대리인이 정리 후 하역 허락; 상황에 따라 운송도구 관련부위 및 동물제품을 적재한 용기, 외 포장, 바닥재, 오염장소 등에 소독처리 진행; 실험실 검역 수요 시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식물해충 및 잡초종자가 혼입이 쉬운 동물제품은 동시에 식물검역 실시
식물 & 식물제품	화물과 포장의 병충해검사;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병충해를 발견하여 확산가능성이 있을 시 화물 및 운송도구와 하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조치; 동물전염병지역에서 수입하거나 전염병과 기생충병원체가 쉽게 혼입되는 동물사료용 식물제품은 동시에 동물검역 실시
동식물성 포장물 & 바닥재	병충해, 잡초종자, 토양 혼입 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샘플채취
기타 검역물	포장의 안정여부, 병충해 오염여부 검사; 포장 파손 혹은 병충해 오염 시 위해제거처리

- ❖ 종자용 대종가축의 수입은 국가동식물검역국이 설립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45일간 격리검역, 기타 동물 수입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30일 격리검역(24조)
- ❖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국가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구정에 따라 검역 실시(26조)
-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은 검역합격 후 수입세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신고서에 날인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발급, 화물주 혹은 대리인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로 세관에 통관신고, 세관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를 근거로 검사 통관(27조)
-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에서 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물주 혹은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동식물검역기구의 감독관리와 기술지도하에 위해제거처리, 대외 클레임 필요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증서 제출(28조)

3. 검사검역 관리

가. 검사검역 형식 및 방법

1) 법정 검사검역

- ❖ 법정 검사검역은 “수출입상품검사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품검사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 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검역물(통칭: 법정검사검역대상)에 대해 검사, 검역, 감정 등 검사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음
- ❖ 수출입상품의 법정 검사검역은 주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약칭: 법정검사검역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음

2) 검사검역 형식

- ❖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사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사를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 상품의 공동 검사, 위탁 검사와 인가 검사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 자체검사
 - 자체검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사를 채택
- ❖ 공동검사
 - 공동검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사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 검사는 수출입상품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 위탁검사

- 위탁검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 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사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
-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가검사

- 인가검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사기관 또는 검사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사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사기관 또는 검사인원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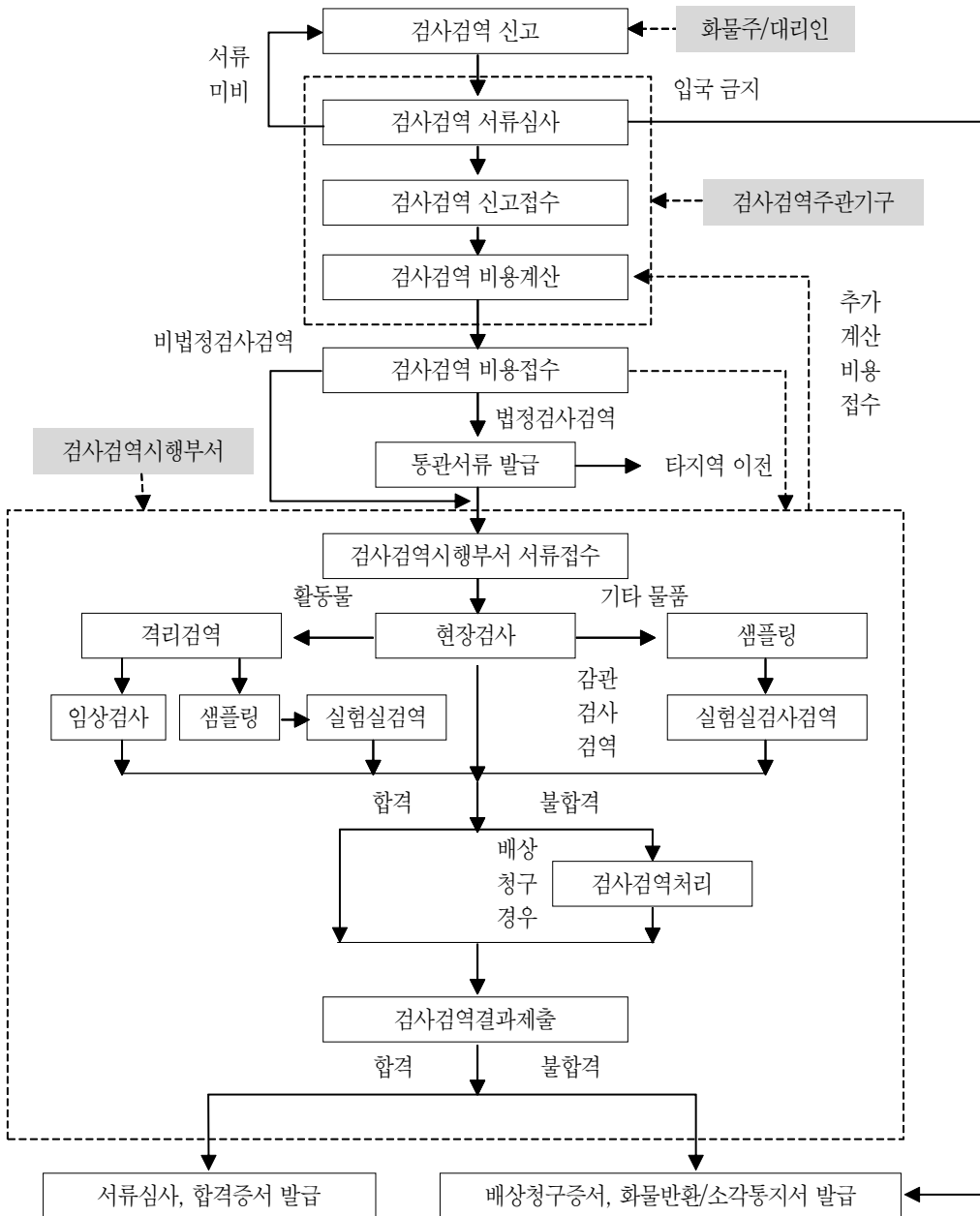
2) 검사검역 방법

- ❖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방법은 ①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② 각종 방법으로 저장 운송, 하역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공구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분류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사로 진행

나. 검사검역 절차 및 제도

1) 수입화물의 검사검역

수입화물 검사검역절차



2)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 검사검역 범위

구분	검사검역 대상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식품첨가제 - 식품용기 - 포장재료 - 식품용공구 및 설비 -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식품 - 식품첨가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화물검사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화물검사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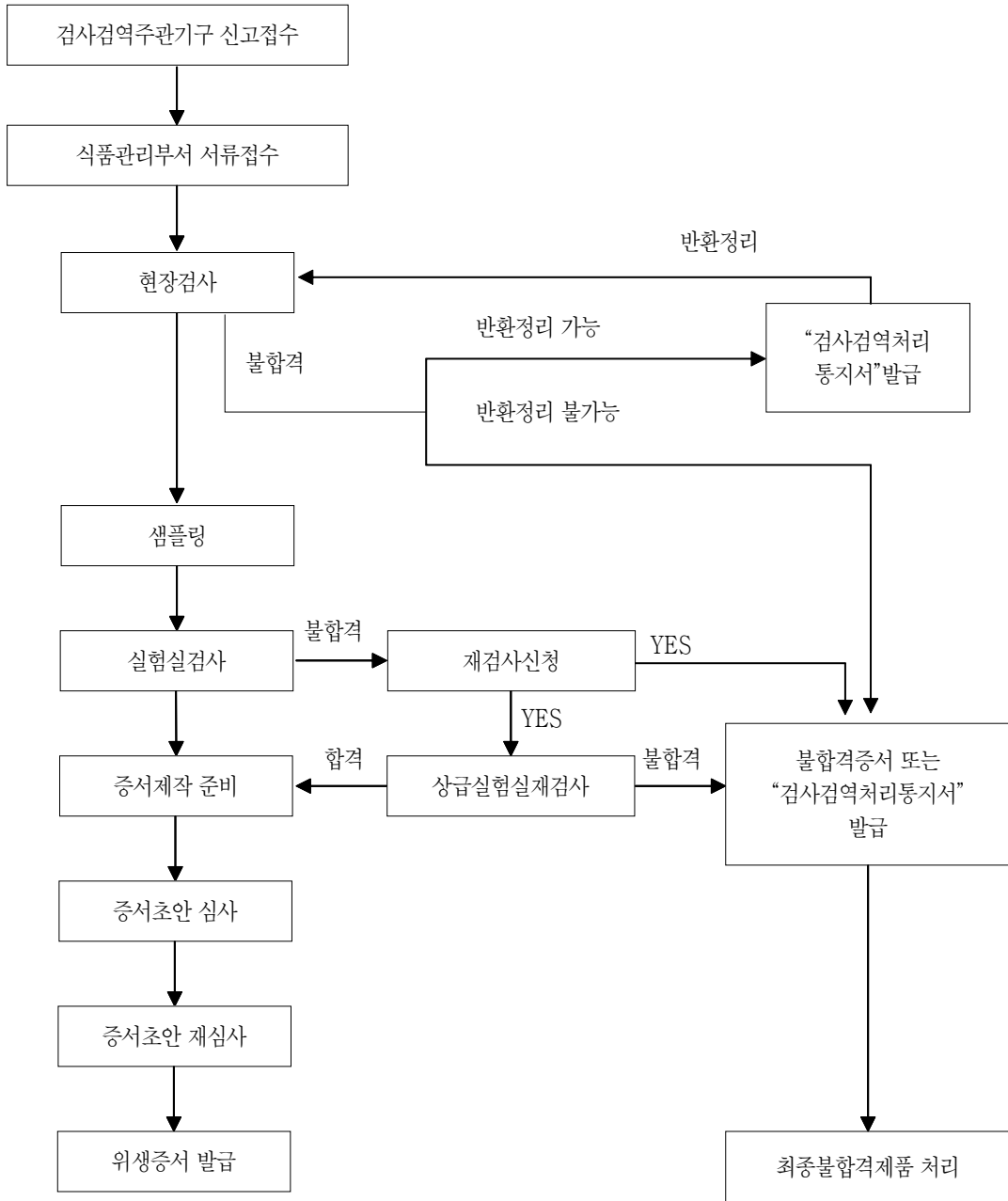
□ 검사검역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입국 30일 전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입국 15일 전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입국 7일 전
입국화물의 대외 배상청구에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 유효기간의 최소 20일 전

□ 검사검역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구 분	관련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의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 불법 생산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5만 위안 벌금 -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10배 벌금 - 업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검사법 실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중지를 명령 - 불법소득을 몰수 - 상품가치의 10~50% 벌금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을 명령 및 경고 - 거절할 경우, 2천~2만 위안 벌금 - 업중할 경우, 생산중지를 명령, 허가증 취소

■ 수입식품 검사검역절차 ■



다. 검사검역 관련기관

1)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검사, 출입국 위생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임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사무청, 법규사, 품질관리사, 계량사, 통관업무사, 위생검역감독관리사,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검사감독관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특종설비안전감찰국, 제품품질감독사, 식품생산감독관리사, 법률집행감독검사사, 국제합작사(WTO사무실), 과학기술사, 인사사, 계획재무사, 감찰내부감사사, 기관당 위원회와 퇴직간부국 등 20개 사(청, 국)로 이루어짐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에 대한 관리를 진행
-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인증인가업무를 관리, 감독, 종합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표준화업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임

3)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속 사업기관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기관서비스센터, 정보센터, 국가검사검역표준과 기술법규 연구센터, 중국섬유검사국,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중국표준화연구원,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중국품질인증센터,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센터, 중국특종설비검사연구센터, 인력자원개발교육센터, 중국품질신문사, 중국국문시보신문사, 중국표준출판사와 중국계량출판사 등 15개 직속 사업기관을 설치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정책결정과 실시에 있어 기술 등을 지원 제공

4)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소속 기관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사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사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촉진회 등 10개 소속기관을 설치

5)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속 출입국관리국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을 설립하고 항구와 화물 집산지에 약 300개 분지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직식 관리를 진행

6) 성급 기술감독국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품질기술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하고 약 2,800개 행정부서를 설치

7) 국가수출입식품안전국

- ❖ 2001년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안전국을 설립하여 수출입 식품, 화장품 안전의 관리업무를 책임짐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 144호, 2012.03.01)

- ❖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을 생산한 해외기업의 등록관리(注册)를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를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검사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 수출입식품의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신용도관리를 실시(4조)
- ❖ 수입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공식 발표 전에는 현행 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산업표준 중 강제집행표준을 근거로 검사 실시.
- ❖ 최초로 수입하며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검사검역기구에 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필히 제출,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 진행(8조)
-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에 등록관리(注册)제도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서류등록(备案).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서류등록(备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서류등록(备案)정보 제공. 등록관리(注册)와 서류등록(备案) 명단은 총국 홈페이지에 발표(9조)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注册)실시 목록 ■

No	명칭	정의	비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불포함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 수입식품이 수입동식물검역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 가능(10조)
- ❖ 동식물전염병 혹은 유독,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수입은 전문 세관을 지정하여 통관 실시. 지정세관조건 및 명단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 및 공식 발표(11조)

■ 검사신고 제출자료 ■ (12조)

1. 계약서, 인보이스, 패키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2. 관련 허가문서
3. 법률법규,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명시한 수출국가(지역) 관방 검역(위생)증서
4.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수입식품라벨샘플과 번역본 제출
5. 최초로 수입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본 방법 8조항 규정 허가증명문서 제출
6. 수입식품에 동봉되는 기타 증서 및 증명서류

※ 검사신고 시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총 가격, 생산일자(번호)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내용을 일일이 신고

- ❖ 검사검역기구는 라벨내용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의 부합여부 및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사 진행, 수입식품라벨 및 설명서 중 수상한 내용, 증서획득, 산지 및 기타내용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16조)
- ❖ 수입식품은 검사검역합격증명 취득 전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7조)
- ❖ 수입식품은 검사검역 합격 후 검사검역기구에서 합격증명을 발급하여 판매와, 사용을 허가. 합격증명은 화물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번호) 등을 포함. 브랜드, 규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기(18조)
- ❖ 수입식품이 검사검역 불합격 시 검사검역기구에서 불합격증명 발급. 안전, 건강, 환경보호항목이 불합격 시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 기타항목이 불합격 시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적 처리 진행, 재 검사를 통하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8조)

-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업체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업체는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서류등록(备案) 신청(19조)

■ 수입업체 등록신청 자료 ■

1. 수입업체등록신청표(进口商备案申请表)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법정대표인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등 원본 & 사본
 3.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설치, 부서기능 및 담당 직책
 5. 경영코자하는 식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식품수입, 가공, 판매 종사 경력자는 관련 설명(식품품종, 수량) 제공
 7. 자체 검사신고 시 자체검사신고단위등록등기증명서 원본 & 사본
-

육류제품 검역

□ 수출입육류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136호, 2011.06.01)

- ❖ 본 방법은 수출입 육류제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 육류제품은 동물 도살체의 식용부분(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통조림 제품은 불포함(3조)
- ❖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사검역 및 감독추출검사를 진행하며 수출입육류제품의 생산가공기업, 수령인, 발송인에 대하여 감독관리수요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 실시(5조)
- ❖ 수입육류제품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사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육류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7조)
-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육류제품의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注册)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9조)
-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육류제품 수입 가능(10조)
-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12조)
- ❖ 수입육류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검사검역기구가 인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서류등록(备案)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에 저장(13조)

■ 신선, 냉동육류제품 포장요구 ■ (14조)

1. 내, 외포장은 무독, 무해 재료 사용하며 완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함
2. 내, 외포장에 원산지, 품명, 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로트번호표기
3. 외포장에 중문으로 규격, 산지,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 내용 표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측 검사검역표기 추가

- ❖ 육류제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 원본,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15조)

■ 수입육류제품 현장검역내용 ■ (18조)

1. 운송도구 위생청결검사. 온도통제설비 정상작동여부, 온도기록계 요구 부합여부
2. 화물과 증서일치여부 검사.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화물명칭, 수량, 중량,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업체명 혹은 등록번호, 생산일자, 포장, 화물기호,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증서번호, 표기 혹은 봉인표기 등 정보
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4. 정량포장 육류제품의 라벨 요구 부합여부
5. 신선, 냉동육류제품은 신선정도, 중심온도의 요구 부합여부, 병리변화여부 및 육안식별가능 기생충, 생활해충, 이물질 및 기타 이상상황 검사, 필요시 증숙(蒸熟)실험

- ❖ 수입신선, 냉동육류제품은 현장검사검역 합격 후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19조)

■ 수입육류제품 검사검역결과 처리내용 ■ (21조)

1. 검사검역 합격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발급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허가.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에 수입육류제품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명과 등록번호,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2. 검사검역 불합격시 검사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이하 상황은 반품 혹은 폐기처리
 - 1)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는 경우
 -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발급 관련 증서 없는 경우
 - 3) 등록관리(注册)를 하지 않은 생산업체 수입육류제품
 - 4)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3. 검사검역을 거쳐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4. 대외 클레임시 관련 증명 발급

❖ 동물역병 유행국가/지역에서 수입금지 동물 및 그 제품 리스트(2015.11.9.)

국가	역병	수입금지 제품
한국	조류 독감	조류 및 그 제품
	돼지콜레라	돼지 및 그 제품
	구제역	우제(偶蹄) 동물 및 그 제품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jgs.aqsiq.gov.cn/fwdh_n/jlgg/2015/201511/t20151112_454220.html)

❖ 평가심사요구에 부합하는 국가/지역에서 육류제품 리스트(2016.10.8.)

국가	제품 종류 및 협정서 체결날짜	비고
한국	삼계탕 (2015년 10월31일 협정서 체결) 조류 인플루엔자(AI) 로 인하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2개 업체 생산을 잠정 중단	<p>등록된 삼계탕 가공업체의 등록번호 : 19980476002(가공, 저장), 6430000-00402006-0014(잠정 중단)(가공, 저장), 2013-0476004(가공, 저장), 6460000-004-1998-0002(가공, 저장), 6430000-004-2009-0002(가공, 저장) 위에 5개 업체가 등록된 제품품목 : 삼계탕</p> <p>등록된 닭(도재, 분할, 저장) 공장의 등록 번호 : 19900476001, 20060405059, 2006-0405061(잠시중단), 2013-0476033, 6460000-005-1998-0004, 6460000-005-1992-0002 위에 6개 업체가 한국 대중수출 삼계탕 업체에게 닭고기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인 직접 대중수출 불가</p> <p>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2016년 11월 18일부터 자체적으로 2개 지역(전남 해남/충북 음성)의 2개 업체(6430000-00402006-0014, 2006-0405061) 가동을 잠정 중단시킴</p>

수산물 검역

-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135호, 2011.06.01)
 - ❖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 본 방법의 수산물은 식용 수생동물 및 제품을 말하며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하지 않음(3조)
 - ❖ 수입수산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사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산물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 제출(8조)
 -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수산물의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注册)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10조)
 -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수산물의 수령인에 대하여 서류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수산물 수입 가능(10조)
 - ❖ 국가질검총국은 안전위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입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및 기타 양식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상기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수입동식물허가증을 취득 해야함(13조)
 - ❖ 수산물의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사검역증서의 원본, 원산지증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14조)
 - ❖ 검사검역기구는 수령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서에 대하여 심사 확인 후 요구에 부합되면 접수, 검역심사비준수량을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고 수입화물통관 증명 발급(15조)

- ❖ 수입수산물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 저장(16조)

■ 수입수산물 현장검역내용 ■ (18조)

1. 증서 대조 확인, 화물 검사 확인
 2. 포장 수입수산물포장기본요구 부합여부 검사 확인
 3. 식물성해충이 쉽게 번식하는 수입 염장 혹은 건제수산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실시, 필요시 위해제거처리
 4. 부패변질여부, 이물질함유여부, 건조여부, 피 얼음 존재여부, 서리 과다여부 검사 확인
-

- ❖ 수입 정량포장 수산물의 중문라벨은 중국식품라벨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함(19조)

■ 수입수산물 샘플 검사항목 ■ (20조)

1.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 중금속, 농수약잔류물 등 유독유해물질
 2. 역병, 기생충
 3. 기타 요구 항목
-

- ❖ 수입수산물 검사검역 합격 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발급하여 생산, 가공, 판매, 사용을 허가.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에 수입수산물의 쉐타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와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검사검역 불합격 시 <검사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 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당사자가 클레임증명 등 기타증명 발급을 신청 시 관련증명 발급(21조)

신선과일 검역

□ 신선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68호, 2005.07.05)

- ❖ 본 방법은 수입 신선과일(이하 과일)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 신선과일무역계약 혹은 협의 체결 전 국가질검총국에 신선과일검역심사비준 신청,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취득(5조)
- ❖ 화물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신고 시 <검역허가증> 원본과 수출국가 지역 관방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원본을 제출
- ❖ 현장 혹은 실험실검역에서 발견된 벌레, 병원, 잡초 등 유해생물에 대하여 감정진행,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 검측 진행 검사검역결과서 발급(11조)
- ❖ 이하 상황발생시 사정에 따라 관련 품종 과일의 수입을 잠시 정지 혹은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잠시 정지한다(13조)

■ 신선과일 수입잠정조치 상황 ■ (13조)

1. 신선과일 과수원, 가공공장지역 혹은 주변지역에 심각한 식물역병 발생시
2. 검사검역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수입 검역성 유해생물 발견 시
3. 검사검역에서 유독유해물질 함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표준규정 초과 시
4. 중국의 검사검역법률, 법규 및 양자협정 혹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 검사검역을 받지 않은 신선과일은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전, 판매, 사용을 금지
- ❖ 신선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한국 포도 수출 허가에 따른 수출지역 리스트 추가

【 대 중국 수출 검사검역 허가 신선과일 품목 및 수출지역 리스트(2016. 9.18.) 】

수출국가/지역	과일 품목
태국	타마린드, 체리모야, 파파야, 오렘자, 구아바, 람부탄, 로스애플, 바라밀, 롱콩, 파인애플, 인삼열매, 바나나, 달리아, 야자, 용안, 두리안, 망고, 여지, 망고스틴, 귤, 오렌지, 유자
말레이시아	용안, 망고스틴, 여지, 야자, 수박, 목과, 람부탄
인도네시아	바나나, 용안, 망고스틴, 살락
베트남	망고, 용안, 바나나, 여지, 수박, 람부탄, 바라밀, 용과
미얀마	용안, 망고스틴, 람부탄, 여지, 망고, 수박, 참외, 모예대추
필리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일본	사과, 배
파키스탄	망고, 감귤류(귤, 오렌지)
인도	망고, 포도
이스라엘	오렌지, 유자, 감귤, 레몬, 자몽
타지키스탄	체리
대만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 체리모야, 목과, 파파야, 오렘자, 망고, 구아바, 로스애플, 빈랑나무, 자두나무, 비파나무, 감, 복숭아, 대추, 매실, 용과, 멜론, 배, 포도, 귤, 유자, 자몽, 레몬, 오렌지
미국	자두나무(캘리포니아주), 체리(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포도(캘리포니아주), 사과, 감귤류(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배(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딸기(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체리, 블루베리
멕시코	아보카도, 포도, 블랙베리, 산딸기
파나마	바나나
스리랑카	바나나
에콰도르	바나나, 망고
콜롬비아	바나나

수출국가/지역	과일 품목
코스타리카	바나나
우루과이	감귤류(레몬 제외), 블루베리
아르헨티나	오렌지, 자몽, 귤, 사과, 배
칠레	키위, 사과, 포도, 자두나무, 체리, 블루베리, 아보카도
페루	포도, 망고, 감귤류(자몽, 귤 및 그 교잡종, 오렌지 및 레몬), 아보카도
프랑스	사과, 키위
스페인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복숭아, 자두나무
이탈리아	키위, 오렌지, 레몬
키프로스	오렌지, 레몬, 자몽, 감귤
벨기에	배
그리스	키위
네덜란드	배
남아공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사과
이집트	감귤류
모로코	감귤류(오렌지, 귤, 클레멘타인, 자몽)
호주	감귤(귤, 오렌지, 레몬, 자몽, 라임, 탄젤로, 단자몽), 망고, 사과(태즈메니아주), 포도, 체리, 유도
뉴질랜드	감귤(귤, 오렌지, 레몬), 사과, 체리, 포도, 키위, 자두나무, 배, 매실, 감
키르기스스탄	체리
북한	허니베리, 블루베리
한국	포도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jgs.aqsiq.gov.cn/rdgz/201609/t20160918_474179.htm)

□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질검총국 한국 對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중국질검총국이 리스크 분석결과에 의거 태국, 스리랑카, 한국, 에티오피아 관련 검사검역기관과 협상을 통해 각각 ‘태국 렌우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泰国莲雾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스리랑카 바나나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斯里兰卡香蕉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한국 포도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韩国葡萄输华植物检疫要求)’, ‘에티오피아 대두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埃塞俄比亚大豆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및 ‘중국 여지 대 한국 수출 검역요구(中国荔枝输韩植物检疫要求)’를 체결하거나 확인했다. 관련 제품 전부 다 검역 허준 절차를 완성하여, 2015년 8월 4일부터 관련 요구에 부합한 태국 렌우, 스리랑카 바나나, 한국 포도 및 에티오피아 대두 대 중국 수출을 허가함

■ 한국 포도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 ■

1. 법률법규의거

- 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 나.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다. ‘한국 신선 포도 대 중국 수출검사검역요구’

2. 입국 허준 품목

- 포도(*Vitis vinifera* Linn.), 아래 ‘포도’라 함

3. 수출 허가 생산지역

- 한국 포도 생산지역

4. 수출 허가 과수원 및 포장공장

- 대중 수출 포도는 등록된 과수원 및 공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수출 화물 본 협정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추적하기 위해 등록정보가 ‘명칭, 주소 및 표기코드’ 포함해야 한다. 등록 리스트는 매년 수출계절 전 한국동식물검역국(아래 ‘QIA’라함)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아래 ‘AQSIQ’)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리스트가 AQSIQ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5.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 5.1 温室条蓟马Hercinothrips femoralis
- 5.2 日本臀纹粉蚧Planococcus kraunhiae
- 5.3 葡萄根瘤蚜Viteus vitifolii
- 5.4 大丽轮枝孢Verticillium dahliae

6. 수출 전 요구

6.1. 과수원 관리

- 가. 매년 포도 성장 시기에 근접한 기간에 실시하거나 인공조사 방법으로 중국에서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요시 화학적(약제)방제 혹은 생물학적 방제 조치를 취한다. 재배자 혹은 가공공장모니터링 및 농약살포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사용된 화학약품은 등록하여 AQSIQ에 제공해야 한다.
- 나. QIA는 부정기 병충해 방제(살포시간, 종류 및 조제량), 논밭위생 관리 등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6.2. 포장공장 관리

- 가. QIA는 수확시기에 대 중 수출 포도의 과수원 및 가공공장 검사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된 과수원에 봉지가 완전한 포도만 포장공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확보한다. 과실은 포도 덩굴에서 직접 따야 되며 나과 없어야 된다. 봉지 달린 채 가공공장으로 운송, 분류 전 봉지를 벗긴다.

- 나. 포장공장 진입된 과실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되며 모든 병충과실, 기형과실 제거, 되도록 과실에 곤충, 진드기, 썩은 과일, 나뭇가지, 나뭇잎, 식물 잔재 및 토양 등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 특히 포도송이 내부 검역성 유해생물 휴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발견 될 경우, 해당 과수원 대 중 포도 수출자격 취소하거나 상응하는 해충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충구제 조치는 AQSIQ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포장상자 내 SO2 랩 칼라야 되며 대 중 수출 포도는 해충 없도록 해야 한다.
- 라. 포장 과정 중 각 포장지 샘플링조사 실시한다.
- 마. 대중 수출 포도 별도로 저장, 유해생물 점염 피하기 위해 전용 창고를 사용한다.

6.3. 포장요구

- 가. 포장재료 새것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하여 관련 식물검역육구에 부합해야 한다. 포장상자 통풍구 있을 경우, 방충 스크린 덮고 해충을 방지해야 한다.
- 나. 각 포장박스에 밀봉 마크를 붙여야 된다. 밀봉 마크는 AQSIQ 및 한국검역주관기관에 등록해야 된다.
- 다. 각 포장박스 위에 영문으로 과일종류, 산지(주, 시 혹은 현), 국가, 과수원 혹은 그 등록번호, 포장공장명칭 및 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각 팔레트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이라고 표기해야 되며 팔레트가 없을 경우, 포장박스 위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로 표기해야 한다.

6.4. 수출 전의 검사검역

- 가. 한국수출과일검사검역 일반 절차대로 현장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한다.
- 나. QIA 혹은 QIA 수권자 아래 비례대로 대중 수출 포도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선적운송 포도, 1차수 2% 비례로 샘플링검사 실시, 600송이 이상이어야 된다. 항공 운수할 경우, 1차수 10% 이상 샘플링검사 실시하도록 한다.
- 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이 검출되면 해당 차수의 화물 대중 수출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과수원 및 포장공장을 중지시키며 QIA 혹은 QIA 수권자 문제점을 발견될 때까지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조사기록을 보존하여 요구대로 AQSIQ 혹은 중국입국항구 CIQ에 제출해야 한다.

6.5. 식물검역증서 요구

- 검사검역 합격될 경우 QIA 혹은 QIA 수권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컨테이너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차수의 포도는 <한국신선포도 대 중 수출 검사검역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없다'란 추가성명을 표기한다.

7. 수입 요구 :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아래와 같은 요구대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7.1. 관련 증명서류 검사

- 가. 한국 대중 수출 포도가 AQSIQ 발급한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구비 여부를 검사한다.
- 나. 관련 증명서류는 본 요구 6.5 규정에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7.2. 수입 검사검역

- '검사검역공작수첩' 식물검사검역부첩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합격될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8. 요구 미달에 대한 처리

- 8.1. 검사검역 통해 포장은 6.3 관련 규정에 미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수입 금지
- 8.2. 등록하지 않은 과수원 및 포장공장 생산한 포도를 검출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수입 금지
- 8.3. 검역성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반품, 중계수출, 소각 및 검역처리를 할 것이다. AQSIQ 즉시 QIA 통지하여 해당 과수원 대 중 국 포도 수출 임시중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취한다. AQSIQ는 QIA 취하는 개선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수출입시금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9. 예비검사

-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QIA 협조 하에 AQSIQ는 2명 검사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대 중국 수출 포도 과수원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방제, 포장 및 냉장관리 등 상황을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적어도 본 사업 시작한 초년에 AQSIQ는 해당 연도 대 중국 수출 모든 차수의 포도에 대해 QIA 혹은 QIA 수권자 연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가 대 중 수출금지 혹은 개선조치를 취한다. 수입검사검역 상황에 따라 AQSIQ는 추후 수확시기에 검역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예비검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10. 회교적인 심사

- 한국포도 유해생물 발생한 변화 및 검출 상황에 따라 AQSIQ는 진일보한 위험평가를 할 것이며 QIA와 협상하여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조정한다.

자료 : 중국품질검독관리검사검역국

(2015.08.04./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508/t20150805_446473.html)

□ 수출입우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152호 2013.02.01)

❖ 본 방법은 우유제품(乳品)은 초유(初乳), 생유(生乳)와 유제품(乳制品)을 포함(2조)

※ 초유(初乳)는 출산 후 7일내 짜낸 우유; 생유(生乳)는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직접 짜낸 성분을 개변시키지 않은 우유로 초유, 항생소 사용기간 및 휴약기간의 유즙, 변질우유는 생유로 사용하지 못함; 유제품(乳制品)은 우유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이중 생유를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공한 제품은 생유제품이라 함

❖ 처음으로 중국에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의 법률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제어체계, 잔류감독제어체계, 동물면역의 검측감독제어체계 및 중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종류 등 자료를 제공;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위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관련 검사검역요구 및 관련증서와 증서제출요구를 확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우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 쌍방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검사검역요구를 확정할 수 있음(5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으로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사업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해외생산기업은 수출국가(지역) 주관부서의 비준 하에 설립된 기업 이어야하며 수출국가(지역)의 법률법규와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함(6조)

❖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은 수출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위생증서가 있어야하며 증서에는 이하 내용을 증명해야함(7조)

- 우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로부터 온 원료임을 증명
- 우유제품이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역병을 제거 및 전파하지 않음을 증명
- 우유제품생산기업이 현지정부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하에 있음을 증명
- 우유제품이 안전하며 식용 가능함을 증명

※ 증서는 수출국가(지역) 정부주관부서의 인장과 권한수여자의 사인이 있어야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되어야 함. 증서 양식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확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

- ❖ 검역심사허가수속을 받아야하는 우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함.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유제품의 종류를 조정하여 공포할 수 있음(8조)
- ❖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의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등록해야 함. 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등록요구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짐. 등록리스트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9조)
- ❖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업체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함. 수입업체는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하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등재지의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등록 신청(10조)
-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은 이하 자료로 세관신고지역의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고(11조)
 - ① 계약서, 인보이스, 패키징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증빙
 - ② 본 방법 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증서
 - ③ 처음으로 수입하는 우유제품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공, “처음으로 수입”이란 해외생산기업, 제품명칭, 배합원료, 해외수출업체, 해외수입업체 등 정보가 완전하게 동일한 우유제품을 동일 세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함
 - ④ 처음 수입이 아닌 우유제품은 최초 수입검측보고서 사본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처음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 항목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우유제품의 위험검측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해야 함
 - ⑤ 수입우유제품안전위생항목(병원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불법첨가물) 불합격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하며, 연속 5회 안전위생 항목 불합격이 발견되지 않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열거된 항목 중 상응하는 검측보고서 복사본과 국가품질감독총국 요구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⑥ 포장 우유제품 수입 시 원문라벨 샘플, 원문라벨 중문번역본, 중문라벨샘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함

- ⑦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유제품 수입시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 ⑧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우유제품 수입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⑨ 보건기능과 연관된 경우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⑩ 수상, 영예, 인증 등을 취득하여 표기 시 외교수단을 통하여 확인한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업체는 수입한 우유제품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증하며 수입우유제품의 종류, 산지, 브랜드를 공포해야 함.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우유제품을 수입 시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의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 함(12조)
 - ❖ 수입정량포장우유제품은 중문라벨, 중문설명서, 라벨이 있어야하며 설명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함(14조)
 - ❖ 수입우유제품은 수입화물검사검역증서 취득 전에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하며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사용불가(15조)
 - ❖ 수입우유제품은 검사검역에서 합격되어 검사검역기구에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발급 받은 후 판매 및 사용 가능, 수입우유제품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에는 제품명칭, 브랜드, 수출국가 혹은 지역, 규격, 수량 & 중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정보 기입(17조)
 -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업체는 우유제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수입우유제품의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납부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함. 기록은 진실해야하며 기록의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역 내 수입업체의 수입과 판매기록에 대하여 검사 진행(19조)

■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수입유제품의 종류 ■

1. 생유(生乳) (건강한 목축유에서 짜낸 어떤 성분변화도 없는 보통우유)
 - 관련 HS코드 : 0401200000
2. 생유제품 (직접 생유를 주원료로 하고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 관련 HS코드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3. 파스퇴르살균유
 - (양이나 소의 생유를 원료로 하고 파스퇴르식으로 살균한 액체상품)
 - 관련 HS코드 : 0401100000, 0401200000

[주] 위에서 말한 HS코드는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하는 수입유제품 관련 HS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수입식품이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 ❖ 질검총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실시 요구 조정 공고(2015년 제3호)
 - 입국 검역검사수속 처리해야 하는 수입 유제품 종류는 기 발표한 생유(生乳), 생유 제품, 파스퇴르멸균유 외에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추가했음. 2015년 2월 1일부터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수입할 때 [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질검총국은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 검사할 때 제출하는 검사보고 규정 사항을 조정 했음. 2015년 5월 1일부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은 본 공고 아래와 같은 규정의 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함

■ 처음 수입이 아닌 수입유제품 검측 항목표 ■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파스퇴르 멸균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Pb)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멸균유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상업무균	GB 4789.26
조제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상업무균(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제품만 적용)	GB 4789.26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균락총수(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2
	대장균군 (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4
발효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효모	GB 4789.15
	곰팡이	GB 4789.15
	유산균(발표 후 가열 처리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35
치즈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리스테리아균	GB 4789.30
	곰팡이 (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효모 (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생크림, 그립, 및 무수그립	납	GB 5009.12
	상업무균(켄 공정으로 혹은 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생크림에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발효 생크림을 원료로 만드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곰팡이	GB 4789.15
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상업무균(연유 및 조제 연유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 (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2
	대장균군 (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4
분유 및 조제분유	단백질	GB 5009.5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납	GB 5009.12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웨이분말 및 라트알부민분말	단백질	GB 5009.5
	회분	GB 5009.4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비탈염 웨이분말에만 적용)	GB 5009.12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초유분말	면역 글로불린 (IgG)	GB/T 5009.194
	납	GB 5009.12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효모	GB 4789.15
	곰팡이	GB 4789.15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살모넬라균	GB 4789.4
	우유 주요 원료로 만드는 영아식품	단백질
지방		GB 5413.3
비타민 A		GB 5413.9
비타민 D		GB 5413.9
비타민 E		GB 5413.9
비타민 K1		GB 5413.10
비타민 B1		GB 5413.11
비타민 B2		GB 5413.12
비타민 B6		GB 5413.13
비타민 B12		GB 5413.14
엽산		GB5413.16
판토텐산		GB 5413.17
비오틴		GB 5413.19
콜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0
이노시톨(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5
타우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6
카르니틴(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29989
칼슘(Ca)		GB 5413.21
린(P)		GB 5413.22
요오드(I)		GB 5413.23
셀레늄(Se) (미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해당 안됨)	GB 5009.93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우유 주요 원료로 만드는 영아식품	철(Fe)	GB 5413.21
	구리(Cu)	GB 5413.21
	아연(Zn)	GB 5413.21
	상업무균(액상 영유아 조제식품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질산염(야채 및 과일 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적용 안 됨)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납	GB 5009.12
	아플라톡신M1	GB 5009.24,GB 5413.37
	납	GB 5009.12
	질산염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009.24,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 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자료 :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2015.1.8.)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업체 및 제품 정보(2016.6.30)

번호	수입업체 명칭	분유브랜드
16	成都纽宏进出口贸易有限公司	With MOM(롯데) 慧智妈咪
18	大连太山贸易有限公司	남양 南阳
49	江苏舜天国际集团机械进出口股份有限公司	임페리얼(남양) 林贝尔
65	青岛索康国际贸易有限公司	아이엠마더(남양) 爱氏妈妈
66	青岛喜恩喜国际贸易有限公司	마더스 케어, All Star, Star 爱智宝, 铭道, 星贝儿
70	厦门森宝集团有限公司	롯데식품 乐天食品
74	汕头市东凯乐有限公司	매일 每日
85	深圳海王食品有限公司	Babikins(넵투뉴스) 喜安智
91	威海市民史乳业有限公司	산양분유(롯데), 미은지(파스퇴르) 韩羊, 美恩智
96	烟台库克进出口有限公司	파스퇴르 帕斯特宝石系列
97	烟台每怡进出口有限公司	매일궁, 매일금전명작 每日宫, 每日金典名作
103	浙江农资集团金鸿进出口有限公司	롯데 乐天
144	广州捷唛进出口贸易有限公司	파스퇴르 기린아 麒麟儿
181	成都高乐儿母婴用品有限公司	롯데식품 柒宝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jckspaqj.aqsiq.gov.cn/zytz/201405/t20140529_413978.html)

절임채소 검역

□ 절임채소 위생기준(GB2714-2015) 정식 발표 (2015.10.31.)

-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국가표준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국가표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제8호 공고 정식 발표, 그 중 김치 대 중 수출에 해당된 GB2714-2015 절임채소 위생기준도 포함.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함

■ 절임채소 위생기준 ■

1. 범위

본 기준은 절임채소에 적용된다.

2. 전문용어 및 정의

2.1 절임류

신선한 채소를 주요원료로 사용하여 절임 및 절임가공을 통해 제조한 각종 채소제품, 장류절임류, 소금절임류, 간장절임류, 설탕절임류, 식초절임류, 설탕식초절임류, 새우기름절임류, 발효채소류 등이 포함됨

3. 기술요구

3.1 원료요구

채소는 신선해야 하며 원료는 상응되는 식품기준 및 유관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감관요구

감관요구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감관요구>

항목	기준	검사방법
맛, 냄새	특이한 맛과 냄새가 없음	적당량을 흰색 도자기 접시에 올려 자연광(光) 상태에서 색상 및 상태를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온수로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상태	곰팡이 및 곰팡이 형태의 반점이 없고 정상시력 관찰시 외래 이물질이 없음	

3.3 오염물제한

오염물 제한수치는 GB 2762의 절임채소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 미생물제한

3.4.1 병원균의 제한수치는 GB 29921 중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채소과실제품(절임류 포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2 대장균군 제한수치는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 대장균군 함량>

항목	표본채취 ^a 및 제한수치(CFU/g로 표시)				검사방법
	n	c	m	M	
대장균 ^b	5	2	10	103	GB 4789.3 평판통계법

a 샘플채취 및 처리는 GB4789.1에 따름

b 비멸균발효형제품은 제외

3.5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의 사용은 GB 2760중 절임류 및 발효류 제품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미생물 제한량 관련 설명

① 대장균: 제품 생산방법의 차등을 고려, 검사수치 결과에 따라 발효형 절임채소를 멸균형과 비멸균형으로 나누어 관리

· 멸균형 제품의 대장균 기준인 ICMSF 3급 표본추출방안을 $n=5, c=2, m=10\text{CFU/g}, M=1000\text{CFU/g}$ 로 개정하며 검사방법은 GB 4789.3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을 따른다.

· 비멸균형제품은 자연발효를 거쳐 생산되므로 그 제품의 원료는 멸균처리를 거치지 않는다. 검사수치에 따라, 지속적인 발효에 따른 PH수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장균군 수량도 점차 감소됨. 관련 전문가의 연구 및 산업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방법의 특수성 원인으로 이 부류 제품에 대한 대장균 제한량 규정은 필요 없음

② 질병균

· 질병균 제한량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병균제한량> (GB 29921-2013) 중 즉석과실채소(절임류 포함)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 살모넬라균: $n=5, c=0, m=0\text{CFU}/25\text{g}$,

· 황색포도상구균: $n=5, c=1, m=100\text{CFU/g}, M=1000\text{CFU/g}$

-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 의미

1) n: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2) c: 허용기준치 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 보다 적거나 같은 최대허용 시료수; 결과가 m보다 크고 M보다 적거나 같은 것 ($> m$ and $\leq M$)은 경우 c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3) m: 허용기준치로서 시료가 "만족(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 이하인 제품은 적합으로 판정

4) M: 최대허용한계치(acceptability threshold)로서 시료가 "불만족(un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초과인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식육가공품의 대장균군 기준은 $n=5, c=2, m=10, M=100$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과의 판정은 대장균군수 시험법에 따라 5개 시료를 검사하여

1) 검사결과 1개 시료이상에서 대장균군수가 100초과 시 부적합으로 판정함

2) 검사결과 2개 시료이하에서 대장균군수가 10초과이면서 100이하이고, 나머지 3개 시료가 모두 10이하인 경우 또는 5개 시료 모두 10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http://www.nhfp.gov.cn/sps/s7891/201510/3ba3419aab8a41a09f4f924788f73793.shtml>)

곡물 검역

- 수출입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발표(총국령 177호, 2016.7.1.)
- ❖ 곡물이라 함은 가공, 비번식용 곡류, 유류, 기름 작물 등 종자 및 감자류의 괴근(뿌리) 및 괴경(덩이줄기)을 의미(2조)
-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수출입곡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하는 수출입검험검역부(검험검역기관)는 각자 관할 지역 내 수출입곡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3조)
- ❖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곡물 해외생산, 가공, 저장업체(아래 ‘해외생산가공업체’)에 대해 등록 제도를 실시(6조)
 - 해외생산가공업체는 수출국가나 해당지역의 법률법규 및 기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강제적 기준의 요구도 부합해야함
 -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곡물해외생산가공업체는 중국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나 해당 지역 주관기관 심사 합격 후 중국국가질검총국에 추천함
 - 중국질검총국은 추천 자료를 받아 심사하여 확인 후,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의 해외생산가공업체 등록을 허가
 - 해외생산가공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4년
 - 등록된 해외생산가공업체의 중국 수출 곡물 검험검역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을 해지시킬 수 있음
- ❖ 중국에 곡물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가공업체는 수출국가나 지역 주관기관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아울러 체질, 이물질 제거, 건조, 방역 등 품질안전 통제시설 및 품질관리제도를 갖춰야 되며 이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7조)
- ❖ 처음 중 곡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가나 해당 지역 공식 주관기관은 중국국가질검총국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곡물 재배 및 저장운송 과정 중의 병충해 발생 종류, 위해정도, 통제현황, 품질안전통제시스템 등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함(8조)
 -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입업체가 신청하여 기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 곡물 리스크 분석, 현지시찰 및 대외협상을 실시하며, 수입 허가된 곡물종류 및 생산국가 혹은 지역리스트를 공개함
- ❖ 수입 곡물은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 지정한 항구로 수입하여야 하며, 지정 항구 조건 및 관리범위는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9조)
- ❖ 중국국가질검총국 수입 곡물에 대해 검역허가제도를 실시함(10조)
 - 수입곡물의 화물주는 무역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수입동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 등 규정에 의거하여 검역심사를 신청해 <중화인민공화국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국가곡물품질안전요구, 동식물검역요구에서 규정하는 관련요구조항을 무역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 수입곡물에 대한 검험검역 요구내용 ■ (11조)

1. 중국정부 및 곡물수출국이나 지역정부 간에 체결한 양자협약, 협정서, 비망록 및 기타 양자협약에서 확정된 관련 요구
2. 중국법률규, 국가기술규범 강제적 규정 및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하는 검험검역요구
3. <검역허가증>에 제시된 검역요구

■ 수입항구검역기관에 제출서류 ■ (12조)

1. 곡물 수출국이나 지역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서
2. 원산지증서
3. 무역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수증 등 무역증빙
4. <검역허가증> 및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빙
5. 양자협약, 협정서, 비망록에서 확정된 증빙 및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빙
6.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입할 경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등 관련 허가문서

- ❖ 현장 검사 전, 수입 곡물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은 수입항구검험검역기관에 서면으로 수입 곡물 선적 훈증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미리 환기를 시켜야 함(13조)
 -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기관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현장 검사를 통해 훈증 잔류물질이 발견될 경우, 훈증 잔류 기체농도가 안전 제한량을 초과할 경우, 검험검역 및 관련 현장 검사를 정지함
 - 훈증 잔류물질 제거 후, 또한 잔류 기체농도가 안전 제한량 이하일 경우, 현장 검험을 다시 시행할 수 있음

■ 현장검사검역내용 ■ (15조)

1. (화물 증서 검사) 증서와 화물의 명칭, 수(중)량, 수출 저장·가공 업체명 및 그 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 선박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할 경우, 지난 운항 시 선적된 화물 및 재고조사 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선적된 곡물의 품질안전 리스크를 평가해야 함. 컨테이너로 선적될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표기 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함
 2. (현장검사) 곡물의 습도, 곰팡이 유무 및 변질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곤충 및 잡초 씨앗 등 유해생물 유무 역시 확인해야 함. 또한 잡곡, 병균 감염 식물, 토양, 훈증제 잔여물, 동물 시체, 동물 배설물 및 기타 수입 금지된 물질 등의 혼재 여부도 확인
 3. (샘플링)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샘플링하여 실험실에서 검사측정을 실시
 4. 기타 현장 검사
-

- ❖ 검사검역기관은 관련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샘플링된 샘플 및 발견된 물질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검사측정을 시행해야 하며 검험검역 결과보고를 발급해야 함(16조)
 - 실험실 검측 샘플은 최소 3개월 간 보존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이상이 있어 대외적으로 증명을 해야 할 경우, 샘플은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함
- ❖ 수입 곡물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검험검역기관 감독 하에 항구 정박지, 항구 혹은 지정된 검역감독관리 장소에서 훈증, 소독 혹은 기타 유해물질 제거 처리를 해야 함(17조)

-
1. 검역성 유해 생물 혹은 기타 검역 리스크가 있는 살아있는 유해곤충을 발견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종자분의(Seed Dressing), 훈증제 오염, 독이 있는 잡초 씨앗 기준치 초과 등 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유효한 기술적 처리 조치 방안이 있는 경우
 3.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

■ 반품 및 소각처리 필요경우 ■ (18조)

1. 국가질검총국 수입 허가 리스트에 없거나 곡물 수출국 혹은 지역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역허가증>이 없을 경우.
2. 독이 있는 유해물질 및 기타 안전 위생 검측결과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유효한 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
3. 유전자변형성분이 검출되었을 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등 관련 허가문서가 없거나 증서 및 허가문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토양, 검역성 유해생물 및 기타 수입 금지된 물질이 발견되었을 시 유효한 검역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5. 수분, 곰팡이 등 변질을 일으키거나 화학적 혹은 방사성 오염이 되어 해당 용도를 변경할 수 없거나 유효한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6.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 수입곡물은 방역, 처리 등 여건을 갖춘 지정 가공장소에서 가공, 사용해야 함. 유효한 유해물질 제거처리 및 가공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곡물은 바로 시장에 진출하여 유통될 수 없음(20조)

❖ 대중국 수출 한국산 쌀 가공공장 등록 목록

등록번호	가공공장업체명	가공공장주소	전화
2015-40-01	유한회사제회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탐천로 243	063-451-2649
2015-23-01	서천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282번길13	041-951-6949
2015-21-01	이천남부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572	031-642-2353
2015-41-01	오케이라이스센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621	061-535-5636
2015-22-01	광복영농조합법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청암로 193	043-218-3388
2015-60-01	동송농협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2403	033-455-4969

※ 자료 : 질검총국(2016.1.13) http://jckspaqi.aqsiq.gov.cn/xz/cksdlsxx/201601/t20160113_458452.htm

기타 법규 및 주요 공고

1)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注册)규정(총국령 145호, 2012.05.01)

▶ 총칙

- ❖ 본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이하 수입식품해외 생산기업)의 등기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기실시목록>(이하 목록)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정,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 <목록>내 부동한 제품유형의 등록 평가심사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에서 별도로 제정, 발표(4조)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注册)실시 목록 ■

No	명칭	정의	비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갑각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변식재료는 불포함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등기조건 ■ (6조)

1. 기업 소재국(지역)의 등기 관련 수의서비스체계, 식물서비스체계, 공공위생관리체계 등은 평가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2.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동식물 원료의 산지는 비 전염병유행지역이어야하며 수출하는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위험제거 혹은 공제가능 증명문서와 관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기업은 소재국(지역) 관련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유효적인 감독관리에 있어야 하며 위생조건은 중국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 등기 신청은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여 혹은 기타규정 방식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추천하며 본 규정 6조항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증명문서 및 자료를 제출(중문 혹은 영문)
- ❖ 등기유효기간은 4년으로 해외식품생산기업의 수요에 따라 등기연장 시 등기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거나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국가인감위에 등기연장신청 제출, 기한 내에 등기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를 말소하고 공고(10조)
- ❖ 등기한 해외식품생산기업의 등기사항 변경시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 혹은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신속히 국가인감위에 통보해야하며 국가인감위는 구체적인 변경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1조)
- ❖ 등기한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외포장에 사실대로 등기번호를 표기해야하며 등기번호 도용 및 양도 금지(12조)

➤ 등기관리

- ❖ 국가인감위는 <목록>내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지정기구를 통해 재검사 진행(13조)
- ❖ 재검사를 통하여 등기한 해외식품생산기업이 등기요구에 계속 부합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자격을 잠시 정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을 잠시 정지시키는 동시에 소재국(지역) 주관부서에 통보. 해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정리 개혁이 필요한 기업을 감독하여 규정기한 내에 정리개혁을 완수하여 국가인감위에 서면보고와 함께 중국법률법규요구에 부합된다는 서면성명을 제출, 국가인감위 심사합격 후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14조)

2)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국가표준(GB29921-2013/2014.07.01)

- ❖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중국 위생부에서 최초로 제정한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의 병원균 오염 억제 및 미생물성 질병 발생 방지를 도모하고 있음

- ❖ 본 기준은 유제품, 수산 제품, 곡물제품 등 총 11대 부류 예포장식품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및 호염균 등 5가지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후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유제품 - 익힌 유제품 - 즉석생유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리스테리아균	5	0	0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대장균	5	0	0	-	소고기 제품만 적용
수산물 - 익힌 수산물 - 즉석 생수산물 - 즉석 해조류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비브리오균	5	1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MPN/g	1,000MPN/g	
즉석 알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양식제품 - 익힌 양식제품 (베이커리 포함) - 인힌 속 밀가루, 쌀제품 - 라면, 쌀 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즉석 콩제품 - 발효 콩제품 - 비 발효 콩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초콜릿 및 코코아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과일야채제품 (절임 채소 포함)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대장균	5	0	0	-	과일야채 제품만 적용
음료(포장된 생수, 탄산음료 제외)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혹은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냉동식품 - 아이스크림 - 아이스바 - 식용 아이스, 하드	살모넬라균	5	1			-
	황색포도상구균	5	0	100CFU/g(mL)	1,000CFU/g(mL)	-
즉석 조미료 간장 장류제품 수산물 조미료 - 복합 조미료(마요네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2	100CFU/g(mL)	10,000CFU/g(mL)	-
	비브리오팀균	5	1	100MPN/g(mL)	1,000MPN/g(mL)	수산물 조미료만 적용
간과류 콩알 제품 - 간과류 및 콩알 소스 - 절인 간과 콩알	살모넬라균	5	0	0	-	-

*1: 식품종류는 병원균 제한량 적용범위 확정에 사용하며 본 기준만 적용됨

*2: n은 샘플링 할 때 샘플 수량 / c는 m수치보다 최대한 초과 허가하는 수량 / m은 병원균 기준치의 허가할 수 있는 제한수치 / M는 병원균 기준치의 최대 안전 제한수치

3)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제43호, 2014.4.14)

- ❖ 수입식품 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업계 스스로 단속을 추진하기 도입
- ❖ 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수렴, 심사 및 보고하여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함
- ❖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의거하여 불량기록을 입력함
 -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중 식품안전 정보를 발견한 경우
 -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관,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 수입식품 불량기록업체 관리 및 통제조치 ■

리스크사전경고조건				조치	리스크해소조건		
불합격 항목 유형	제품 종류	불합격 항목 종류	불합격 회수		공공조건	지정 시간	지정 회수
위생 안전 항목	1	1	≥2	불량기록제품종류의 불합격항목 검측보고 제출	1. 조치 후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조치실시 시간 ≥ 지정 시간; 3. 조치실시 후매식품수입회수 ≥ 지정회수	6개월	5
	1	≥2	≥4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8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非위생 안전 항목	1	1	≥3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6개월	5
	1	≥2	≥6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12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기타품질안전Risk				지정제품의 지정항목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10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

1. 총칙

- 가.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및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 나. 본 세칙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및 대리업체(이하 ‘수입식품업체’라 함) 불량기록 사용관리에 적용한다.
- 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통제 조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 심사 및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2. 불량기록 발생

-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한 검토 및 판정을 통하여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을 입력한다.
- 가.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나. 국내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다.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구,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라.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3.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 가.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부속문건 1, 2 참조)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한다.

- 나.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 지역의 불량기록 취합하여 보고하고, 엄중한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려 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 다.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판정 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하여 이를 공포한다.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실시목록>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가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총국 2012년 제 145호령)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 내 개선,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

4.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 가. 국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공상등기소제지 또는 최근 12개월 내 수입식품 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등급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한다.
- 나. 국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결과를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실시하여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 다.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2)을 갖춘 경우, 해당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문제 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 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5. 부칙

- 가. 전에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와 본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 나. 기업이 제출하는 검사측정보고는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국외의 합법적인 검사측정 역량을 갖춘 검측기구와 국내 식품검사검역기구 자격 인정을 취득한 검사측정기구는 검측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측기구 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하고, 동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 2) 검사측정보고는 수입식품의 생산일자 또는 생산 차수와 일치해야 한다.
 - 3)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기록 판정을 받은 경우, 검측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
- 마.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질검총국이 담당한다.
- 바.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식품리콜관리방법 (총국령 제12호, 2015.3.11.)

❖ 국가식품의약국(CFDA)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이하 ‘관리법’)을 발표해 201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관리법은 리콜 제도를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식후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식품을 1등급으로 분류, 해당식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후 24시간 내 제품 회수를 시작,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모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함
- 식품섭취로 인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2등급, 가짜 상표 또는 허위로 표시된 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해당식품에 대한 회수를 시작, 근무일 기준 20일과 30일 이내에 전량 회수할

것을 규정함.

-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식품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검출될 시 즉각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판매자는 해당식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섭취를 금하는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당식품의 불안전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 해당 관리법은 리콜 등급을 명확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회수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식품범죄에 관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국당국의 리콜 제도를 구체화해 식품안전제도의 법제화를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국제관례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포
- 중국정부는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을 처음으로 법제화했으며, 2014년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정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것이라 발표한 바 있고, 아울러 국무원은 ‘2015년도 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계획’을 발표해 종합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
- 중국정부는 식용농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식품가공업, 잔류농약, 수의약품검사까지 대대적인 식품안전캠페인을 벌였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농산품안전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식품안전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식품생산 허가제 규정을 보완했음
- ❖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강화를 선언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방침임

제1조 식품생산 경영관리를 강화, 불안전식품 리스크를 감소 및 피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불안전식품의 생산 경영 중지, 리콜, 처리 및 감독관리를 본 방법에 적용한다.

불안전식품(不安全食品)의 정의: 식품안전법률법규에 규정된 생산이 금지된 식품 및 인체건강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증명/증거가 있는 식품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에 대한 생산중지, 리콜, 처리의무가 있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각자 행정구역 내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의학, 독성학, 화학, 시품, 법률 등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식품안전 전문가팀을 구성,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요소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행정 지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처리를 담당하며 식품경영자 주체 책임 구체화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7조 식품산업협의의 자율 강화를 독려 및 지원하여 산업 규범을 제정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의무 실행을 유도 및 추진한다. 국민이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독려 및 지원한다.

제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과정중의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경우 즉시 생산중지하고,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생산중지 및

소비자에게 섭취중지를 알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중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기관은 생산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집중거래시장 개설자, 식품경영 장소 대여자, 식품박람회 개최자는 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유효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유효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터넷 식품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식품경영자가 생산하는 불안전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타 생산경영자가 통제하는 상태 중 일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체검사, 소비자 고발(제보), 경영자나 감독기관의 고지 등의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이 불안전식품으로 인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식약감독기관은 리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식품안전위험정도 및 긴급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리콜 한다.

- 1급 리콜 : 식용후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24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2급 리콜 : 식용후 일반적인 건강상 위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48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3급 리콜 : 허위표시한 식품은 인지한 후 72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지방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제1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 한다.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은 식품생산자의 리콜계획을 받은 후 전문조직이 리콜계획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리콜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즉시 수정한 후 수정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제15조 식품리콜계획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수량 및 리콜 지역

리콜원인 및 위험

리콜등급, 절차 및 기한

리콜통지 혹은 공고의 내용 및 발표방식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리콜식품의 처리조치, 비용부담 상황

리콜의 예상효과

제16조 식품리콜공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등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등

리콜원인, 등급, 시작하는 기일 및 끝나는 기일, 구역범위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소비자 반품과 보상의 절차

제17조 불안전식품이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성급 주요 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리콜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와 링크해야 한다. 불안전식품은 2개 이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및 중앙 주요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18조 1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2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2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3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발표 후 3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현급이상의 식약감독기관의 동의를 거쳐 식품생산자는 리콜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공포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사실을 인지한 후 불안전식품의 구매, 판매를 중지하여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경영 장소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생산자가 발표하는 공고를 붙여야 되며 식품생산자 리콜 전개를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가 자체 원인으로 인한 불안전식품 법률법규의 규정대로 경영 범위 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 불안전식품 리콜 하는 것을 공급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즉시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리콜 통지 혹은 공고 중 특별히 자체 원인으로 식품불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걸 표기를 해야 한다.

제21조 생산자가 확정 못하거나 파산 등 원인으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할 수 없을 경우, 식품경영자가 해당 경영범위 내 자발적 불안전 식품을 리콜 해야 한다.

제22조 식품경영자가 불안전식품 리콜 절차는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다.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중지, 리콜 등 원인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불안전식품에 대하여 보완, 무공해 처리 및 소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

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대로 불안전식품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 불법으로 비식용 물질, 부패 변질, 병사된 가축 폐기물을 첨가하는 인체 건강 및 생명을 해치는 불안전식품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소각해야 한다. 소각 여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자가 집중 소각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집중 소각하기 전에 현급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25조** 라벨, 표기 등 식품안전기준에 미달로 리콜 된 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보완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상태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보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 제26조** 불안전식품을 무공해 처리를 하여 자원 재활용 할 수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에 대한 처리방식을 확정 못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하여 평가의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2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사실대로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번호, 수량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다.
- 제29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을 발견할 경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생산경영 중지 혹은 리콜, 관련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사 분석을 전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31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장에서 감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이 비교적 높은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끝난 후 5개 근무일 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33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생산경영자가 정기적 혹은 부정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하는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보고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하는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길로 판단되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 보다 더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처리한다.
- 제35조**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하여 현급이상 지방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조기 경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을 중지시켜 소비자에게 불안전식품을 식용 중지 제시를 해야 한다.
- 제36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을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과일에 기록해야 한다.
-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불안전식품의 생산중지, 리콜, 처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제8조의 제1항, 제12조의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제1항, 제21조, 제23조의 제1항, 제24조의 제1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지하지 않거나 자발적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시간 내 리콜하지 않거나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39조** 식품경영자가 본 방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자가 불안전식품 리콜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또한 5,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4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13조, 제24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 제4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식품 처분을 명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거절하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하여 또한 2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4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상황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해도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기타 법률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해소하거나 감소할 경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비교적 경미한 위법 또한 즉시 시정하여 위해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하지 않는다.
- 제4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본 방법에 규정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나쁜 결과를 일으킬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담당자에게 행정 처분을 한다.
- 제45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보건식품은 본 방법에 적용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도매, 소매시장 혹은 생산가공업체에 들어가는 식용농산물의 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은 본 방법 참조하여 이행한다.
- 제46조** 본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0053/115580.html>)

5) 新광고법 (2015.9.1.)

❖ 중국 신광고법 출범, 보건식품 및 주류 관련 규정 강화

- 1994년 광고법을 반포한 후 처음으로 수정함.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공상기관에 접수된 보건식품 신고 사건이 총 201만건, 보건식품 중에는 면역력 제고 효능인 보건식품은 36.2% 차지, 신고원인은 대부분 허위광고 및 품질 문제임. 이에, 신광고법은 보건식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으며, 적발 시 부과하는 벌금도 1994년판 광고법과 비교하면 10~20배 올랐음
- 광고법 중 보건식품 및 주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18조 보건식품 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효능 및 안전성의 확인 혹은 보장할 경우
2. 질병예방 및 치료기능
3. 광고제품은 건강보장 필수 표시하거나 암시할 경우
4. 약품 혹은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할 경우
5. 홍보대사를 이용하여 추천하거나 증명할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금지하는 기타 내용

보건식품 광고는 명확히 '본 제품 약물 대체 불가' 표기해야 됨

제23조 주류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음주를 유도, 권하거나 무절제하게 홍보할 경우
2. 술을 권하는 동작이 나타날 경우
3. 차, 배 및 비행기 운전하는 장면이 나타날 경우
4. 음주가 긴장 및 불안 해소, 체력 증가 등 효능을 명시 혹은 암시할 경우

제40조 미성년에게 대중매체에서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계,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및 미성년 건강에 안 좋은 온라인게임을 발표하면 안 되며, 14세 미만 미성년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광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미성년이 부모에게 광고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 달라고 타일러 유도할 경우
2. 불안전 행위 모방을 일으킬 때

제57조 본 법 제40조 위반 할 경우, 공상국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발포 금지를 명령하여 광고주에게 20만 이상 1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함. 정도가 심할 경우, 영업집조를 폐지시켜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허준문서를 취소, 1년 내 동 제품의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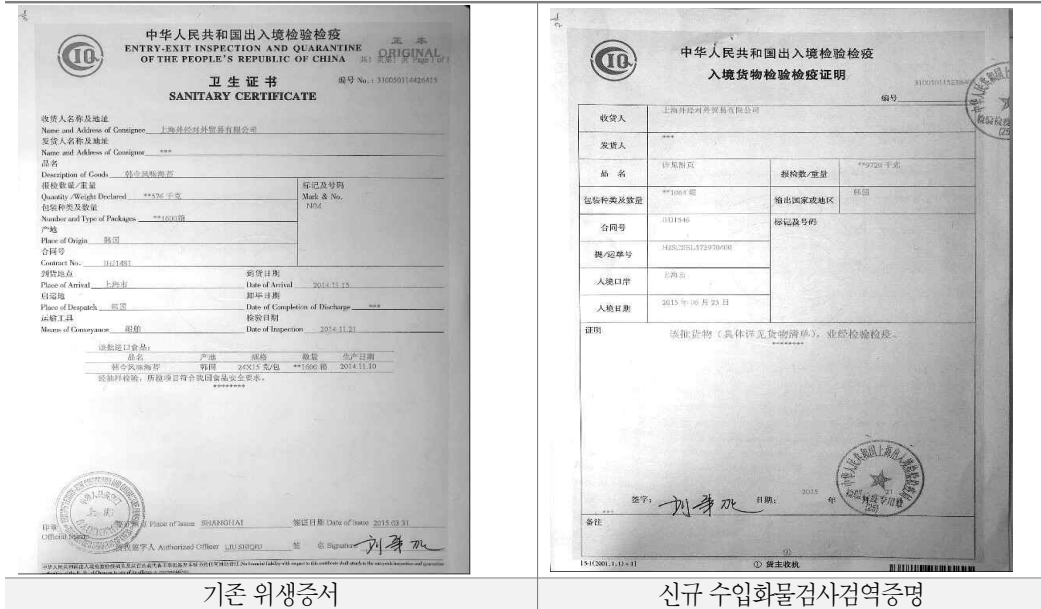
제58조 본 법 제18조 및 제23조 위반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발포 금지를 명령하여, 광고주 상응한 범위 내 영향 해소를 명령하여, 광고비용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광고비용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정도가 심할 경우, 광고비용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광고비용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영업집조를 폐지시켜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허준문서를 취소, 1년 내 동 제품의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0784/118160.html>)

6)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발급에 대한 공고(제91호, 2015.8.10.)

❖ 질검총국에서 수입식품, 화장품의 검사검역증서 발급을 규범화하여 검사검역증서 발급 통일성 및 엄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증서발급, 문구규범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 증서종류 :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합격 혹은 검사검역 불합격, 추후 유효적인 조치를 취해 합격해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위생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 증서문구 : 수입식품, 화장품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 발급 시, 질검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 외에 증명 칸에 통일적인 증명문구 ‘상술한 화물 검사검역감독관리 통과, 수입을 허가함(上述货物业经检验检疫监督管理, 准予进口)’
- 2015년 8월 10일 부터 시행했으며, 기존 ‘수출입검사검역사증관리방법’(국질검통[2009]38호)이 본 공고와 불일치할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기존 위생증서

신규 수입화물검사검역증명

자료 : 중국품질검독관리검사검역국(2015.08.10.)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5/201508/t20150810_446735.html

7) 新식품안전법 (2015.10.1.)

- ❖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수정된 ‘식품안전법’을 공포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新식품안전법’은 당초 104조에서 50조를 추가하여 154조로 변경되었음. 8가지 제도 구축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며 가장 엄격한 전 과정 감독제도 수립

■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 제정 추이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관리조례 (1979)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초 행정법규로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제정한 규범성 문건
- 식품위생법(시행) (1982)
- 식품위생법 (1995)
 - 총 9장 57조로 구성, 현 식품안전법의 전신
- 식품안전법 (2009)
 - 총 10장 104조로 구성, 식품 단계별로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분산형 감독체계를 명문화

❖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 수입되는 식품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 첨부 필수
- 중국 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 시, 수입업체는 국제표준 또는 생산국의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결과, 생산국의 합법적인 생산증명 제출 필수
- 수입업체의 해외 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 수립 필수
- ※ 수입식품이 중국의 법, 법규, 식품안전표준 등을 이행하는지 심사

-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수입산 식품이 본 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중국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식품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 관련 평가 및 심사 진행 가능, 평가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사검역요구를 정할 수 있음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특히 위탁, OEM, 소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조제방식으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을 금지

※ 영유아분유 생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

국가는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원료의 입고로부터 완성품 출고까지 전반과정에 대하여 품질관리하고 출고한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차수로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성을 보증한다.

영유아조제식품에 사용하는 신선우유, 보조원료 등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임을 보증해야 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배합방법 및 라벨 등 사항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기(备案)해야 한다.

위탁, 주문자상표부착, 분할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으며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방법으로 부동한 브랜드의 영유아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다.

❖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타오바오, 1호점 등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에 대해 실명 등기 등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함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연대책임과 선 배상을 의무화

※ 기존 온라인전자상거래 특히 B2B상거래에서 난무하는 가짜식품, 모방식품에 대한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제시함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에 입점하는 식품경영자에게 실명등기를 요청하고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에 의해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 시 즉시 그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동시에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소재지 현급 식품약품안전관리부문에 보고하고 엄중한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플랫폼 서비스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구매 후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볼 경우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식품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플랫폼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을 한 후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했을 경우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본 조항의 1.2항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연대책임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 관련업계의 책임 및 처벌 강화

- 불법 첨가물 등 안전사고는 5~10배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인상하여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심각한 범죄 시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소비자가 부적합 식품으로 손실을 본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실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후,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 청구

- 기업처벌 강화

- 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책임자는 5년간 식품생산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을 처벌 받은 자는 영원히 종사할 수 없음

- 정부담당자 문책강화

-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결과가 심각한 경우 면직처분함

- 신고 포상 및 책임보험제도 마련

- 책임보험제도 : 식품산업 관련 기업이 일정 액수의 식품안전보험비를 납부

❖ 보건식품 관리강화 및 제도변경

-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

-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 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

※ 등록(注册) : CFDA(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의 심사를 요함(까다로움)

※ 신고(备案) : 신고제도로 등록(注册)에 비해 용이

국가는 특정보건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성명하는 식품(이하 보건식품)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 관리 한다. 보건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혹은 만성 위해를 주면 안 되며 라벨과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야 하고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적합한 군중, 적합하지 않은 군중, 기능성분 혹은 상징성 성분 및 성분함량 등을 명시해야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과 설명서에 일치해야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수출국가 주관부서에서 출시, 판매를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한다.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식품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목록(이하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식품이 성명 가능한 보건기능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국가중의약관리부서와 연동하여 제정 및 조정하여 발표한다.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해야 한다.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한다. 기타 보건식품(신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보건식품 혹은 처음 수입이 아닌 보건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신고(备案)관리를 실시한다.

보건식품 등록(注册), 신청인은 보건식품의 연구개발보고,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안전성과 보건기능 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술심사평가를 조직하여 안전과 기능이 성명한 요구에 부합되면 등록을 승인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시 등록불가와 함께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에 등록을 허가한 경우 기 신원료를 적시에 보건식품원료목록에 넣어야한다.

보건식품 신고(备案), 등기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및 제품 안전성과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보건식품의 등록인, 등기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진다. 성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사회에 등록 및 등기한 보건식품 목록을 발표해야한다.

제 4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라벨링제도 일반

1. 식품라벨관리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102호, 2008.09.01.)

가. 총 칙

- ❖ 본 규정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 ❖ 국가질검총국은 직책범위 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 조직하며 현급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 식품라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4조)

나.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 식품명칭 표기요구 ■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크기로 1~2항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정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함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 & 주소표기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 생산자 & 주소 기타규정 ■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지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산지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裝)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裝)문자 명시

❖ 생산일자 & 유통기한표기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특수저장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 면제가능. 일자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포장식품 내용량 표기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 배합원료 표기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 집행표준 표기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된 기업표준번호 표기(12조)
-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 비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경고설명 표기(15조)

■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 ■ (16조)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 ■ (18조)

1. 질병예방, 치료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보건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와 표주이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 ■ (19조)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

다.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 ❖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함(20조)
- ❖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 ❖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 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 ❖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함(23조)
- ❖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 ❖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2.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12년 27호 공고, 2012.06.01.실시)

가. 총칙

- ❖ 본 규정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설명서 포함)의 검사와 감독관리업무에 적용(2조)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관리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나. 라벨검사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 제공자료 ■ (6조)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업체, 경소상 혹은 대리업체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

- ❖ 검사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 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의 일상 검사감독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사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 라벨 불합격 상황 ■ (9조)

1. 수입 정량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 정량포장식품 격식, 지면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 수입 정량포장식품 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업체 혹은 대리인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 처음으로 수입하여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증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다. 감독관리

-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 정량포장식품 라벨검사업무에 대하여 관리하며 각 지역 검사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 수출입 정량포장식품 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 전까지는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 각 지역 검사검역기구는 라벨 검사 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1.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04.20.실시)

가. 범위

-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 라벨에 적용하며 정량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용어의 정의

- ❖ 정량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 ❖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 ❖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 ❖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 ❖ 품질보증기간 : 정량포장식품 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 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기한 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품질을 유지 함
- ❖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합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 ❖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정량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다. 기본요구

- ❖ 정량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헛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 표시 금지
-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 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함
- ❖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돈되게 해서는 안 됨
- ❖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
-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됨
 -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함(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업체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국외등록상표 제외)
- ❖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cm²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 한 개의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함
- ❖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라. 표시내용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일반요구: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

❖ 식품명칭(食品名称)

-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 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금지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통칙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
-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
-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예를 들면 ‘주스 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여야 함
-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음.

❖ 배합원료표(配料表)

-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 배합원료표는 <配料> 혹은 <配料表>로 하여야 함
- 각종 배합원료는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됨
- 모종 배합원료가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배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 모종의 복합배합원료가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하며 식품첨가제의 통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음(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함.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음.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방법이 포함되지 않음. 첨가량이 식품 총량의 25%보다 적은 복합배합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예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배합원료표에 표시해야 하며 가공과정에서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배합원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배합원료표에 원시배합원료를 표시.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칩술, 캔디, 참쌀종이 등
- 식품배합원료는 성분리스트 표시방법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

성 분	유형소속명칭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포함하지 않음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함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껌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체	“츄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 배합원료의 정량표시(配料的定量标示)

-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한 경우 강조한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함
- 식품라벨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성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 강조하는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식품명칭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 내용량과 규격(净含量和规格)

- 내용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함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부록 C 참조)
-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액체식품 :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고체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 내용량 계량단위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 내용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

계량방식	내용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 1000mL Q ≥ 1000mL	毫升 (mL) (ml) 升 (L) (l)
질 량	Q < 1000 g Q ≥ 1000 g	克 (g) 千克 (kg)

-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

내용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mm
5mL < Q ≤ 50mL 5g < Q ≤ 50g	2
50mL < Q ≤ 200mL 50g < Q ≤ 200g	3
200mL < Q ≤ 1L 200g < Q ≤ 1kg	4
Q > 1kg Q > 1L	6

-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하여야 함
- 용기 중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 일 경우, 내용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동일한 정량포장에 여러개 독립된 정량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내용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
- 규격의 표시는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规格”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규격인즉 내용량을 가리킴(표시형식 부록C 참조)
- 생산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生产者, 经销者的名称, 地址和联系方式)
- 법에 근거하여 등록하여 제품안전품질책임을 질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되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
-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
- 독립 법률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기지는 그룹과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 혹은 그룹의 명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하여도 됨.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
- 위탁을 받고 정량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 혹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산지만 표시하여도 됨.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
-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온라인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로 표기

- 수입정량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혹은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업체, 수입업체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

❖ 일자표시(日期标示)

- 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하게 표시. 일자표시를 <포장의 어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 일자표시는 따로 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됨.(표시형식 부록C 참조)
- 동일 정량포장에 다양한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이 표시된 독립 정량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장에 표시되는 품질보증기한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으로 표시.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최초 생산한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거나 외포장 완성일자 혹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각각 표시해도 됨
- 년, 월, 일의 순서대로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자표시 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함 (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저장조건(贮存条件)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부록 C 참조)

❖ 식품생산허가증번호(食品生产许可证编号)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함

❖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代码)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정량포장식품(수입은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

❖ 기타 표시내용

- 조사(방사선)식품(辐照食品)
-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辐照食品”이라고 표시
-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 배합원료는 배합원료표에 반드시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转基因食品)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영양라벨(营养标签)

- 특수 식사류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부식류 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함
- 기타 예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 질량(품질)등급(质量(品质)等级)
집행하는 제품표준이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시
- ❖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식품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
- ❖ 표시내용의 면제
 - 아래 정량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미원
 - 정량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²보다 작을 경우(최대 표면면적계산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됨
- ❖ 추천 표시 내용
 - 로트번호 :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 식용방법 :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배합원료표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함
 -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종류)
 - ☞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 ☞ 어류 및 그 제품
 - ☞ 알(蛋)류 및 그 제품
 - ☞ 땅콩 및 그 제품

- ☞ 대두 및 그 제품
- ☞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 견과류 및 씨(果仁)류 제품

❖ 기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부록 A)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최대 표면면적 계산방법

A.1 장방체형 포장물 또는 장방체형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장방체형포장물 또는 장방체포장용기의 최대 한 개 측면의 높이(cm)곱하기 넓이(cm)

A.2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용기 또는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물 용기에 근접한 포장물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높이(cm)곱하기 원 둘레 길이(cm)의 40%

A.3 기타 모양의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총 표면적의 40%

만약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에 명확한 주요 전시 면이 있을 경우 주요전시면의 면적을 최대표면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포대 등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변두리밀봉면적을 감해야 한다. 병 또는 캔의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어깨부분, 목 부분, 정상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록 B) : 배합원료 중 식품첨가제의 표시방법

B.1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스트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 시럽,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2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 명칭 및 국제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3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스트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 식품첨가제항 통일표시 형식건립

B.4.1 일반원칙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반드시 표시, 영양강화제, 식용에센스향료, 유잉킴기초제(糖基糖果中基础剂)물질은 배합원료표의 식품첨가제항 외에 표시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 중 식품첨가제항의 표시순서는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제의 총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B.4.2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스트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3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국가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4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스트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부록 C) : 부분 품목 라벨링에 대한 추천 표시양식

C.1 요약

본 부록은 부분 정량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추천 양식 예시를 통해 매칭 된 항목을 표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식품의 특성이나 포장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정을 통해 사용 시 반드시 추천 양식의 기본 함의와 일치해야 한다.

C.2 내용량과 규격 표시

내용량을 표시 할 때 계량단위는 통일적으로 g을 사용하며 구분 기호로는 콜론을 사용한다. 라벨링 시 실제 상품의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고 빈칸 혹은 기타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C.2.1 단일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5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25g(200g+25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25증정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25)g

C.2.2 내용량과 고형물의 표시(ex: “통조림배시럽”)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25g 沥干物(혹은 固形物 혹은 배 토막): ≥250g(혹은 ≥60%)

C.2.3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동질 정량포장식품 포함 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0g×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5×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가지);
净含量: 200g 规格: 5×40g;
净含量: 200g 规格: 40g×5;
净含量: 200g 规格: 5가지;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100g+5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80g×2+40g);
净含量: 200g 规格: 100g+50g×2;
净含量: 200g 规格: 80g×2+40g;

C.2.4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이질 정량포장식품 포함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A상품 40g×3, B상품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3,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100g A상품, 50g×2 B상품, 50g C상품;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净含量/规格: 100g(A상품), 50g×2(B상품), 50g(C상품);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C.3 일자 표시

일자 중 년, 월, 일은 빈칸, 사선, 하이픈, 기간 등 부호로 분리하거나 구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년은 보통 4자리 수로 표시하며 작은 포장 식품의 경우 2자리 수로 표시하고 월, 일은 2자리 수로 표시한다.

일자의 표시형식

2010年 3月 20日:

2010 03 20; 2010/03/20; 20100320; 20일3월2010년; 3월20일2010년;

(月/日/年): 03202010; 03/20/2010; 03202010;

C.4 품질보증기한 표시

품질보증기한의 표시형식

...전 까지 식용 권장 함; (最好在....之前食(饮)用)

...전 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之前食(饮)用最佳)

...전까지 제일 좋다; (...之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제일 좋다....; (此日期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此日期前食(饮)用最佳....)

유통기한은까지 입니다; (保质期至....)

유통기한 **개월(保质期...个月)(혹은 *日, 혹은 *天, 혹은 *周, 혹은 *年)

C.5 보관조건 표시

보관조건 표시 시 “贮存条件”, “贮藏条件”, “贮藏方法” 등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보관조건의 표시 형식

상온(혹은 냉동, 냉장, 어두운 곳, 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常温(혹은 冷冻, 冷藏, 避光, 阴凉干燥处)保存)

~℃보관; (**~**℃保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请置于阴凉干燥处)

상온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냉장 보관 하십시오; (常温保存, 开封后冷藏)

온도: <<**℃, 습도: <<**℃ (温度: <<**℃, 湿度: <<**℃)

2.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28050-2011

(위생부. 2013.01.01.실시)

가. 범위

본 표준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에 제시하는 영양정보의 묘사와 설명에 적용됨.
본 표준 보건식품 및 정량포장식품특수음식용식품(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의 영양라벨표기에 적용하지 않음

나. 용어와 정의

1) 영양라벨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성분표, 영양성명 및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포함. 영양라벨은 정량포장식품라벨의 일부분임

2) 영양소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다사를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및 비타민을 포함

3) 영양성분

식품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성분을 가리킴. 각 영양성분의 정의는 GB/Z21922 <식품영양성분기본용어>에서 참조할 수 있음

4) 핵심영양소

영양라벨 중의 핵심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포함함

5)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참고시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

6) 영양소기준치(NRV)

식품영양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됨

7) 영양성명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성명,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 영양성명은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을 포함

8) 함량성명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성명. 성명용어는 ‘높’ ‘낮’ 혹은 ‘없음’ 등 포함

9) 비교성명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류 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성명. 성명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등을 포함

10) 영양성분기능성명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성명

11) 반올림 간격

반올림 수치 최소한 수치의 단위

12) 식용 가능 부분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은 식용 불가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

다. 기본요구

- ❖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질실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함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됨
- ❖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은 중문을 사용해야 함.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함
- ❖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형식으로 표시하여 하며 블록 사이즈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함.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함
- ❖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음. 각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NRV)는 부록A 참조
- ❖ 영양라벨의 양식이 부록B 참조,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음
- ❖ 영양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함

라. 강제표기내용

- ❖ 모든 정량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이게 해야 함
- ❖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성명 혹은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예포장식품은 상기에 제시한 내용 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화 (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 ❖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됨

마. 선택표기내용

- ❖ 강제표기내용을 제외하고 영양성분표 중에 표1 제시한 기타 성분도 선택 표기할 수 있음
- ❖ 한 영양성분 함량 표기수치 표C.1의 함량요구와 제한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함량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 성명방식이 표C.1 참조. 한 영양성분 함량은 표C.3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비교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 성명방식은 표C.3 참조. 한 영양성분은 동시에 함량성명 및 비교성명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두 가지 성명방식을 동시 사용할 수 있거나 함량성명만 사용해도 됨.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동의어는 표C.2와 표C.4참조
- ❖ 한 영양성분의 함량 표기수치 함량성명 혹은 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부록 D 제시하는 상응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양성분기능성명 기준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기능성명용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수정, 첨가 및 합병을 하면 안 됨

바. 영양성분의 표기방식

- ❖ 정량포장식품 중 열량과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100그램(g)과(혹은) 매100밀리리터(mL)과(혹은) 한 몫의 식품가능부분 중의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되 한 몫으로 표기할 때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함. 한 몫의 크기 식품의 특점 혹은 추천물량에 의거하여 규정함
- ❖ 영양성분표 중 강제표기 및 선택 가능 표기의 영양성분의 명칭, 순서, 표기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 등 표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한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순서대로 위로 이동함.
- ❖ 표1를 제외하고 GB14880과 고생부 공고 중 강화를 허락된 기타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표 1에 나열한 영양소 뒤에 표기

■ 표 1 열량, 영양성분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및 ‘0’ 경계치 ■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열량	킬로줄(kJ)	1	≤17kj
단백질	그램(g)	0.1	≤0.5g
지방	그램(g)	0.1	≤0.5g
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트랜스지방(산)	그램(g)	0.1	≤0.3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단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다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1	≤5mg
탄수화물	그램(g)	0.1	≤0.5g
설탕(유당)	그램(g)	0.1	≤0.5g
식이섬유(혹은 단체성분,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그램(g)	0.1	≤0.5g
나트륨	밀리그램(mg)	1	≤5mg
비타민A	(μ gRE)	1	≤8 μ gRE
비타민D	마이크로그램(μ g)	0.1	≤0.1 μ g
비타민E	(mg α -TE)	0.01	≤0.28mg α -TE
비타민K	마이크로그램(μ g)	0.1	≤1.6
비타민B1(티아민)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2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6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12	마이크로그램(μ g)	0.01	≤0.05 μ g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밀리그램(mg)	0.1	≤2.0mg
니코틴산	밀리그램(mg)	0.01	≤0.28mg
엽산	(μ g) 혹은 (μ g DFE)	1	≤8 μ g
판토텐산	밀리그램(mg)	0.01	≤0.10mg
비오틴	마이크로그램(μ g)	0.1	≤0.6 μ g
콜린	밀리그램(mg)	0.1	≤9mg
인	밀리그램(mg)	1	≤14mg
칼륨	밀리그램(mg)	1	≤20mg
마그네슘	밀리그램(mg)	1	≤6mg
칼슘	밀리그램(mg)	1	≤8mg
철	밀리그램(mg)	0.1	≤0.3mg
아연	밀리그램(mg)	0.01	≤0.30mg
요오드	마이크로그램(μ g)	0.1	≤3.0 μ g
셀레늄	마이크로그램(μ g)	0.1	≤1.0 μ g
구리	밀리그램(mg)	0.01	≤0.03mg
불소	밀리그램(mg)	0.01	≤0.02mg
망가니즈	밀리그램(mg)	0.01	≤0.06mg

a. 영양성분의 표기단위가 표 중의 중문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음

b. 한 영양성분 함량수치 ≤ '0' 경계치, 함량은 '0'로 표기해야 함. '뿔'으로 계량단위를 할 사용할 때 매100mg 혹은 100ml의 '0' 경계치 규정에 부합해야 함

c. 유 및 유제품의 영양라벨은 직접 유당을 표기할 수 있음

- ❖ 제품 유통기한 안에 열량과 영양성분함량 허용오차범위는 표 2 제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표 2 열량 및 영양성분함량의 허용 오차범위 ▣

열량과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제외), 광물질(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	≥80% 표기치
식품 중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반식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유당 제외)	≤120% 표기치
식품 중 비타민A와 비타민D	80%~180% 표기치

사.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

-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
- ❖ 알코올함량 ≥0.5%의 음료 주류
- ❖ 포장 총면적 ≤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 ≤20cm²의 식품
-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 포장하는 음용수
- ❖ 매일식용량 ≤10g 혹은 10ml의 예포장식품
- ❖ 기타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안 표기해도 되는 정량포장식품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함

부록 A) : 식품라벨영양소기준치(NRV) 및 그 사용방법

A.1 식품라벨영양기준치(NRV)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열량a	8400kJ	엽산	400µg DFE
단백질	60g	판토텐산	5mg
지방	≤60g	비오틴	30µg
포화지방산	≤20g	콜린	450mg
콜레스테롤	≤300mg	갈슘	800mg
탄수화물	300g	인	700mg
식이섬유	25g	칼륨	2000mg
비타민A	800µgRE	나트륨	2000mg
비타민D	5µg	마그네슘	300mg
비타민E	14mg α-TE	철	15mg
비타민K	80µg	아연	15mg
비타민B1	1.4mg	요오드	150µg
비타민B2	1.4mg	셀레늄	50µg
비타민B6	1.4mg	구리	1.5mg
비타민B12	2.4µg	불소	1mg
비타민C	100mg	망가니즈	3mg
니코틴산	14mg		

a열량은 2000kcal와 대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제공하는 열량은 각각 총열량의 13%, 27%, 60%

A.2 사용목적 및 방식

열량 혹은 영양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 것과 묘사에 적용됨. 영양성명과 수치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사용방식이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지정한 NRV%의 반올림 간격은 1다, 예를 들어 1%, 5%, 16% 등

A.3 계산

영양성분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계산공식(A.1):

$$NRV\% = X/NRV \times 100\%$$

X=식품중 모 영양소의 함량

NRV=해당된 영양소의 영양소기준치

부록 B) : 영양라벨형식

B.1 본 부록이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의 형식을 규정한다.

B.2 아래 6가지 형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영양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B.2.1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예1 참조

예1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열량)	千焦(kJ)	%
蛋白质(단백질)	克(g)	%
脂肪(지방)	克(g)	%
碳水化合物(탄수화물)	克(g)	%
钠(나트륨)	毫克(mg)	%

B.2.2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예2 참조

예2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열량)	千焦(kJ)	%
蛋白质(단백질)	克(g)	%
脂肪(지방)	克(g)	%
-饱和脂肪(포화지방)	克(g)	
胆固醇(콜레스테롤)	毫克(mg)	%
碳水化合物(탄수화물)	克(g)	%
-糖(설탕)	克(g)	
膳食纤维(식이섬유)	克(g)	%
钠(나트륨)	毫克(mg)	%
维生素A(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μgRE)	%
钙(칼슘)	毫克(mg)	%

주의: 적당한 형식을 사용하여 핵심영양소를 더 뜨이게 해야 함

B.2.3 외국어 표기하는 형식

외국어를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3 참조

예3

■ 营养成分表/nutrition information ■

项目 Items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per 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 NRV%
能量(energy)	千焦(kJ)	%
蛋白质(protein)	克(g)	%
脂肪(fat)	克(g)	%
碳水化合物(carbohydrate)	克(g)	%
钠(sodium)	毫克(mg)	%

B.2.4 가로형식

가로형식
 가로형식 영양라벨 예4 참조

예4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脂肪 (지방)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	-	%

주의 :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나열하여 2칸 혹은 이상 표기한다.

B.2.5 문자 형식

포장의 총면적이 100cm²보다 작을 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 표 아니 다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양기준치(NRV) 생략해도 된다.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도 된다. 예5 참조

예5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100g, 能量(열량)××kJ, 蛋白质(단백질)××g, 碳水化合物(탄수화물)××g, 钠(나트륨)××mg.

B.2.6 영양설명과 영양성분기능설명을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6참조

예6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열량)	千焦(kJ)	%
蛋白质(단백질)	克(g)	%
脂肪(지방)	克(g)	%
碳水化合物(탄수화물)	克(g)	%
钠(나트륨)	毫克(mg)	%

영양설명 : 저지방××

영양성분기능설명: 매일 음식 중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 비례는 총열량의 30% 초과하면 적당하지 않다. 영양설명, 영양성분기능설명이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해도 됨. 글자크기는 식품명칭과 상표보다 크면 안 됨

부록 C) : 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요구, 여건과 동의어

- C.1 표C.1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 C.2 표C.2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 C.3 표C.3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 C.4 표C.4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동의어

【 표C.1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 고체 ≤80kJ/100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10% NRV 매 100ml 함량≥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5% NRV	
	단백질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20% NRV 매 100ml 함량≥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10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지방	≤0.3g/100g 고체; ≤1.5g/100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와 요구르트: 지방함량≤0.5%; 분유: 지방함량≤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1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저포화지방	≤1.5g/100g 고체 ≤0.75g/100ml 액체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3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성명함량요구 및 제한여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 콜레스테롤	≤20mg/100g 고체 ≤10mg/100ml 액체	
탄수화물 (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 (액체)	유제품만 제한
	저당	≤5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저유당	유당함량≤2g/100g(ml)	
	유당이 없음	유당함량≤0.5g/100g(ml)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함	$\geq 3g/100g(\text{고체})$ $\geq 1.5g/100ml(\text{액체})$ 혹은 $\geq 1.5g/420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geq 6g/100g(\text{고체})$ $\geq 3g/100ml(\text{액체})$ 혹은 $\geq 1.5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5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성명의 성명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leq 40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leq 120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비타민	비타민x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x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다양한 비타민'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물질(나트륨 불포함)	x내원, 혹은 x함유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다. 혹은 x풍부하다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다양한 광물질'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뫼'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야만 성명할 수 있음.

【 표C.2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 '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지방이 적다.' 저지방설명에만 적용됨

【 표C.3 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

비교성명의 방식	요구	여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 표C.4 비교성명의 동의어 】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증가	증가 ×% (×배)	감소	감소 ×% (×배)
	증 ×% (×배)		감 ×% (×배)
	가 ×% (×배)		소 ×% (×배)
	제고 ×% (×배)		줄임 ×% (×배)
	첨가 ×% (×배)		하락 ×% (×배)
	증가 ×%, 제고(×배)		하락 ×% (×배) 등

3.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 GB13432-2004 (국가질검총국. 2005.10.01실시)

가. 특수식용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의 정의

- ❖ 부분 특수소비자들의 생리수요 혹은 부분 질병환자의 영양수요에 따라 특수 배합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성분함량이 일반식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

나. 기본요구

-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이하 내용 표기금지
 - 질병 예방, 완화, 치료 혹은 치유작용
 - 회춘, 검은머리재생, 치아갱생, 항암, 암 치료 혹은 유사용어
 - 식품명칭에 약물명칭 혹은 약물도안 추가, 피로, 보건기능을 암시하는 명칭

다. 강제표기내용

- ❖ 식품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특수식용식품 정의에 부합되는 식품명칭에만 영아조제분유, 무당두유(당뇨병환자용), 철강화고단백두유(빈혈환자용) 등 특수 의미가 있는 수식어 사용 가능
- ❖ 배합원료 리스트 및 배합원료정량표기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의 실제 영양소로 표기, 영양강화제 첨가시 강화영양제함량 표기
- ❖ 내용량 및 고형물함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일자표기 및 저장설명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특수저장조건 표기
- 개봉 후 저장이 적당하지 않거나 원 포장내 저장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시

❖ 식용방법 및 적합군체

- 식용방법, 매일 혹은 매찬 식용량 표기
- 식용에 적합한 소비자 군체 표기

❖ 제품표준번호 & 품질등급 & 기타강표기내용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라. 표기 허용내용

- ❖ 칼로리, 영양소 함량 수준 성명
- ❖ 칼로리, 영양소 함량 비교 성명
- ❖ 영양소 작용 성명

마. 추천 표기내용

- ❖ 영양성분 표기에 <중국주민식사영양소참고섭취량>중 추천 섭취량과 비교분석표기

※ 자료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gjcxjg_qwyd.jsp?bzNum=GB13432-2004

4.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10344-2005 (국가질검총국, 2006.10.01실시)

가. 음료주(alcoholic beverage) 정의

- ❖ 알코올 도수가 0.5%vol 이상 알코올음료로 발효주, 증류주와 배합주 포함

나. 기본요구

-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다. 강제표기내용

❖ 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배합원료리스트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알코올도수

- 酒精度로 알코올도수 표기

❖ 맥아즙, 과즙함량

- 맥주는 맥아즙 농도(°P 혹은 °) 표기
- 과실주(포도주 제외)는 과즙함량 % 표기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자 및 저장설명

- 포장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년, 월, 일 순으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저장조건 표기

❖ 내용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반 毫升 혹은 mL(ml), 升 혹은 L, l로 표기, 내용량 황주는 千克 혹은 kg 표기가 가능

❖ 제품표준 & 품질등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경고문구

- 유리병 포장 맥주는 GB4927-2001 규정에 부합

❖ 생산허가증

-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주류는 생산허가증표기와 번호 표기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포도주와 알코올도수 10%vol 이상 기타 음료주는 품질보증기한 면제

라. 비 강제 표기내용

❖ 생산로트번호

❖ 음용방법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유형

※ 자료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at/gjcxjg_qwyd.jsp?bzNum=GB10344-2005

라벨링 사례

1. 막걸리 등록사례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배합원료, 제품유형, 알코올도수, 원산국, 저장조건, 생산업체, 포장일자, 품질보증기한, 수입사 & 주소 & 연락처, 내용량

2. 커피음료 등록사례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제품유형, 배합원료표, 내용량, 원산국, 제조사, 수입사 & 주소 & 전화,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방법, 영양성분,

3. 고추장 & 탄산음료 등록사례

<p>2012.09.17 중국_비빔고추장 450 g</p> <p>103°61 감각 금색 6도</p>  <p>92°48</p>  <p>90°49 2도</p> 	<p>○ 중문 표기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칭 - 상표 - 무색소, 방부제표기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주소 - 수입업체 & 주소 & 전화 - 주의사항 - 식용방법 - 영양성분 		<p>○ 중문 표기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칭 - 제품유형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수입업체 & 주소 & 전화 - 영양성분
--	--	---	---

4. 영양성분 표시 사례

 <p>食品名称: 韩今大酱 (豆酱) 净含量: 500g · 原产国: 韩国</p> <p>配料: 大豆, 面粉, 山梨酸钾, 米曲霉</p> <p>生产日期: (年.月.日) 2013.10.07</p> <p>保质期: 12个月 · 贮藏方法: 存放于阴凉干燥处, 开封后请冷藏保存。· 生产商: 韩国每日食品(株)</p> <p>总代理商: 上海韩今贸易有限公司 地址: 上海市普陀区新村路 423弄 绿地普陀商务广场29号504室</p> <p>电话: 021-60941441 / 021-56156769 http://www.kjmaell.com.cn</p> <p>*注意: 产品内含有防腐剂山梨酸钾, 不可食用。 放置越久会有颜色变深或变淡自然成熟现象, 请放心食用。</p> <table border="1"> <caption>营养成分表</caption> <thead> <tr> <th>项目</th> <th>每100克</th> <th>NRV %</th> </tr> </thead> <tbody> <tr> <td>能量</td> <td>864千焦</td> <td>16%</td> </tr> <tr> <td>蛋白质</td> <td>11.5g</td> <td>23%</td> </tr> <tr> <td>脂肪</td> <td>6.6g</td> <td>13%</td> </tr> <tr> <td>碳水化合物</td> <td>21.5g</td> <td>43%</td> </tr> <tr> <td>膳食纤维</td> <td>6.52g</td> <td>20%</td> </tr> </tbody> </table>	项目	每100克	NRV %	能量	864千焦	16%	蛋白质	11.5g	23%	脂肪	6.6g	13%	碳水化合物	21.5g	43%	膳食纤维	6.52g	20%	 <p>丹特牌蜂蜜柚子茶 净含量: 300g</p> <p>配料: 蜂蜜柚子(柚子30%, 白砂糖30%)65%, 白砂糖20%, 纯净水20%, 蜂蜜(韩国产)2.5%, 柠檬酸, 维生素C</p> <p>食用方法: 用冷水或温水(50-60℃)加入柚子茶, 20g-30g充分搅拌均匀即可饮用。</p> <p>贮存条件: 密封后冷藏保存, 开封后必须冷藏。</p> <p>生产日期: 2014年 2月 14日 保质期: 12个月</p> <p>产地: 韩国京畿道抱川市新抱川洞清溪路3097号83-8</p> <p>中国总代理商: 上海丹特食品有限公司 地址: 浦东新区川沙新镇周浦国际大厦1216室 电话: 021-23824579/021-58409327/010-84467137</p> <table border="1"> <caption>营养成分表</caption> <thead> <tr> <th>项目</th> <th>每100g</th> <th>NRV %</th> </tr> </thead> <tbody> <tr> <td>能量</td> <td>1000千焦</td> <td>20%</td> </tr> <tr> <td>蛋白质</td> <td>0.5g</td> <td>1%</td> </tr> <tr> <td>脂肪</td> <td>0.5g</td> <td>1%</td> </tr> <tr> <td>碳水化合物</td> <td>25g</td> <td>50%</td> </tr> <tr> <td>膳食纤维</td> <td>0.5g</td> <td>1%</td> </tr> <tr> <td>钠</td> <td>10mg</td> <td>0.2%</td> </tr> </tbody> </table>	项目	每100g	NRV %	能量	1000千焦	20%	蛋白质	0.5g	1%	脂肪	0.5g	1%	碳水化合物	25g	50%	膳食纤维	0.5g	1%	钠	10mg	0.2%
项目	每100克	NRV %																																						
能量	864千焦	16%																																						
蛋白质	11.5g	23%																																						
脂肪	6.6g	13%																																						
碳水化合物	21.5g	43%																																						
膳食纤维	6.52g	20%																																						
项目	每100g	NRV %																																						
能量	1000千焦	20%																																						
蛋白质	0.5g	1%																																						
脂肪	0.5g	1%																																						
碳水化合物	25g	50%																																						
膳食纤维	0.5g	1%																																						
钠	10mg	0.2%																																						
 <p>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p> <p>Serving Size 1 pack(190 ml) Serving Per Container 1</p> <p>Portion 1carton:190 ml Portion par contenant:1</p> <p>Amount Per Serving Teneur par portion</p> <p>Calories / Calories 120 Calories from fat / Calories des lipides 25</p> <p>% Daily Value* / % Valeur quotidienne</p> <p>Total Fat / Lipides 2 g 5%</p> <p>Saturated / Saturés 2 g 10%</p> <p>+Trans / trans 0 g</p> <p>Cholesterol / Cholestérol 0 mg 3%</p> <p>Sodium / Sodium 70 mg 3%</p> <p>Carbohydrate / Glucides 20 g 7%</p> <p>Dietary Fiber / Fibre alimentaires 0 mg 0%</p> <p>Sugars / Sucres 15 g</p> <p>Protein / Protéines 4 g</p> <p>Calcium / Calcium 10% Iron / Fer 0%</p> <p>*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diet of other people's misdeeds. *Pourcentage de la valeur quotidienne selon un régime alimentaire de 2 000 calories.</p> <p>영문표기형식</p>	 <p>永明 味回水那吉干扁</p> <p>食品名称: 威特味回水那吉干扁 配料表: 生牛乳, 碳酸钠, 产品类别: 调味乳</p> <p>原产国: 韩国 生产日期及到期日期: 见产品外包装管理标示</p> <p>贮存条件: 0-10℃冷藏保存, 开封后必须冷藏, 并且在二周内食用及尽早食用。</p> <p>生产商: 威特味回水那吉干扁(牙山工厂)</p> <p>总代理商: 青岛三洲食品有限公司 地址: 青岛市城阳区长夏街道东黄埠社区 电话: 0532-8793-3920</p> <p>代理商及经销商: 本社, 代理点以及购买处。 总代理商: www.yongmeiilk.co.kr; www.whobangmaori.com 经销商: 青岛三洲食品有限公司 经销商: PST (Polystyrene Terephthalate) 经销商电话: 6449006-004-1993-0001</p> <p>净含量: 1L</p> <table border="1"> <caption>营养成分表</caption> <thead> <tr> <th>项目</th> <th>每100ml</th> <th>NRV %</th> </tr> </thead> <tbody> <tr> <td>能量</td> <td>100千焦</td> <td>20%</td> </tr> <tr> <td>蛋白质</td> <td>3.0g</td> <td>6%</td> </tr> <tr> <td>脂肪</td> <td>0.5g</td> <td>1%</td> </tr> <tr> <td>碳水化合物</td> <td>10.0g</td> <td>20%</td> </tr> <tr> <td>膳食纤维</td> <td>0.5g</td> <td>1%</td> </tr> <tr> <td>钠</td> <td>10mg</td> <td>0.2%</td> </tr> </tbody> </table> <p>가로표기형식</p>	项目	每100ml	NRV %	能量	100千焦	20%	蛋白质	3.0g	6%	脂肪	0.5g	1%	碳水化合物	10.0g	20%	膳食纤维	0.5g	1%	钠	10mg	0.2%																		
项目	每100ml	NRV %																																						
能量	100千焦	20%																																						
蛋白质	3.0g	6%																																						
脂肪	0.5g	1%																																						
碳水化合物	10.0g	20%																																						
膳食纤维	0.5g	1%																																						
钠	10mg	0.2%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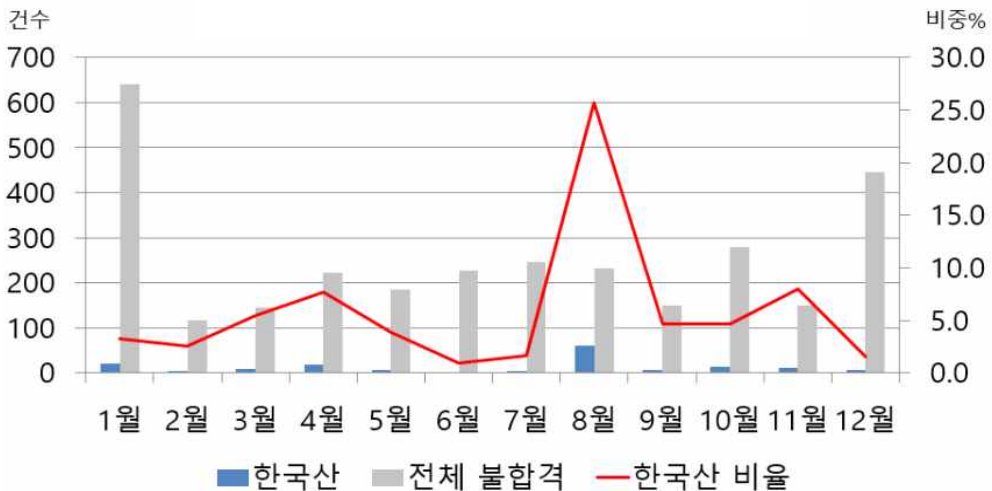
통관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제 1 절

통관문제사례 동향

-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식품·화장품의 통관 거부 건수를 월별로 발표하며, 불합격 상품에 대해서는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음
- ❖ 2016년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식품은 총 3,042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산은 총 161건으로 전체 5.3%를 차지. 8월 통관 거부율이 25.8%로 가장 높음

■ 2016년 월별 중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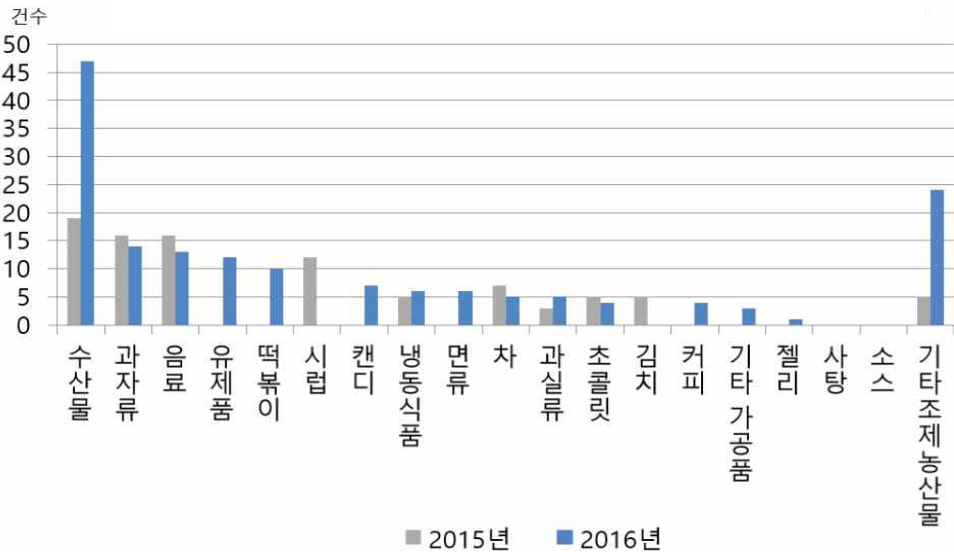
	전체 불합격 건수(A)	한국산 불합격 건수(B)	한국산 비율(B/A)
1월	641	21	3.3%
2월	117	3	2.6%
3월	146	8	5.5%
4월	223	17	7.6%
5월	184	7	3.8%
6월	227	2	0.9%
7월	247	4	1.6%
8월	233	60	25.8%
9월	149	7	4.7%
10월	279	13	4.7%
11월	150	12	8%
12월	446	7	1.6%
합계	3,042	161	5.3%

자료출처 : 중국국가질검총국

□ 2016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중 가운데 수산물, 과자류, 기타조제농산물 등의 제품이 불합격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16년 수산물이 47건으로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기타조제농산물(24건), 과자류(14건) 등임

■ 2015~2016년 제품별 한국 식품 통관 거부 건수 ■



제품 종류	2015년	2016년
수산물	19	47
과자류	16	14
음료	16	13
유제품	0	12
떡볶이	0	10
시럽	12	0
캔디	0	7
냉동식품	5	6
면류	0	6
차	7	5
과실류	3	5
초콜릿	5	4
김치	5	0
커피	0	4
기타 가공품	0	3
젤리	0	1
사탕	0	0
소스	0	0
기타조제농산물	5	24
합계	93건	161건

자료출처 : 중국국가질검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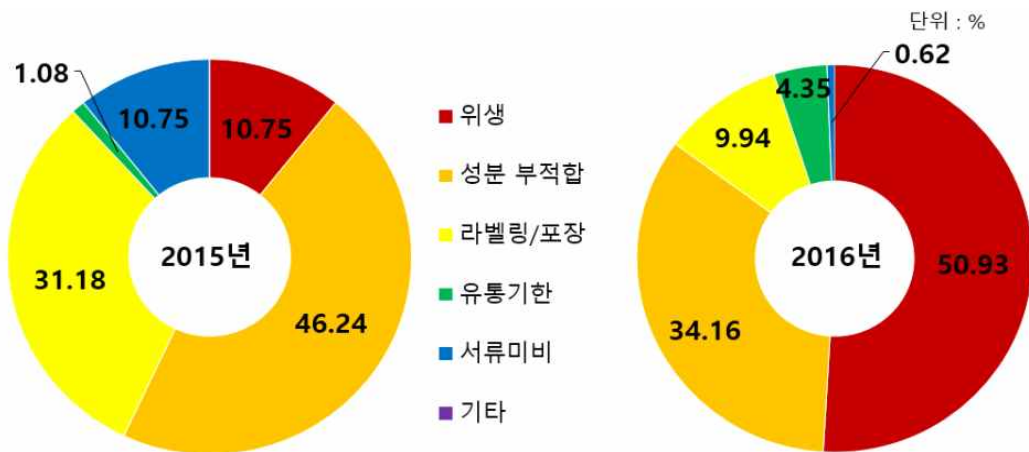
통관문제 사유분석

□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통관 거부 사례는 위생, 성분 기준치 초과, 라벨 및 포장 불합격이 차지함

❖ 2016년 통관 불합격 사유는 위생 부문이 8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분 기준치 초과(55건), 라벨 불합격(16건) 등임

- 미생물은 균락총수, 대장균군, 곰팡이, 효모균수 등을 포함하며, 식품첨가물은 주석산, 안식향산, 카페인, 아스파탐, 아디프산, 에리트로신, 주석산 등을 포함함

■ 사례별 분류 ■



거부 사유	2015년	2016년
위생	10건	82건
성분 부적합	43건	55건
라벨링/포장	29건	16건
유통기한	1건	7건
서류미비	10건	1건
기타	0건	0건
합계	93건	161건

자료출처 : 중국국가질검총국

가. 최근 중국 정부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대중국 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 지난 8월에 60건의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여기에는 국내 식품 분야 대기업도 포함됨
- ❖ 올해 통관 거부된 수산물 제품이 총 47건에 달하며, 8월에는 총 30건의 김 제품이 통관 거부되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 한국산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이 해당된 거부 사유로는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여기에는 김, 과자 및 라면류 등이 포함됨

나. 과자류, 라면 등 유통기간이 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및 라벨링 주의필요

- ❖ 지난 2016년 1월~12월 한국산 과자, 라면은 수입 검역과정에서 각각 14건, 6건 적발되었음
- ❖ 적발된 과자, 라면 등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유통기한 초과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식품첨가제 초과 및 사유로 적발된 제품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라벨 문제는 20%를 차지함
- ❖ 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첨가물 기준치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그대로가 수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첨가물로 과자에는 주석산과 수분, 라면은 이산화유황 등이 있었음
- ❖ 최근 중국 내 간식류 대표 온라인마켓인 이하오디엔(一号店)에서 판매중인 과자 제품의 이산화유황 기준치가 초과되어 해당 제품 제조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음

- ❖ 이산화유황은 기준치에 적당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미미하나, 그 양을 초과할 경우, 호흡곤란,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킴. 이에 중국 당국은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며 이산화유황을 비롯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다. 중국 음료류 식품첨가물 주의필요

- ❖ 2016년 중국 내 한국산 음료 제품(음료, 차, 커피 포함) 수입 통관 과정에서 기준 위반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1월~12월 총 22건으로, 식품첨가물, 라벨, 위생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첨가물 기준치 초과가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식품첨가물 기준치 사례에서도 동(銅), 아스파탐, 가소제, 카페인, 영양 강화 성분 등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음
- ❖ 가소제, 카페인은 중국 내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첨가물들이며, 향후 위험성 표시 및 기준치 검사에 있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 최근 중국 소비자가 중국 음료 시장 1위 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 제품 표면에 카페인 중독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 카페인 성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 이 사건으로 코카콜라사가 음료 제품에 카페인 중독 위험을 경고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음료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 한편, 2011년 다수의 대만산 식품에서 가소제 검출, 2012년 주귀주라고 불리우는 주류에서 가소제가 대량 검출, 2013년에도 백주라는 주류에서 DEHP(비스 프탈레이트)와 DBP(프탈산디부틸)의 함량 기준 초과로 문제가 되면서, 관련 성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라. 분유, 우유 등 유제품의 경우 식품첨가물 주의해야, 보호무역 영향 추정

- ❖ 지난 2016년 1월~12월 한국산 분유, 우유 등 유제품의 경우는 수입 검역과정에서 총 12건 적발되었음

- ❖ 2016년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유의 경우 대장균 기준치 초과에 의한 사례는 1건만 존재하였으나 식품첨가물 불합격에 의한 경우가 8건, 라벨 3건으로 나타남
- ❖ 특히, 2017년 초에는 2016년 이미 건분제품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유제품이 질검총국으로부터 수입정지처분 통보를 받았으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보호무역의 영향으로 추정됨
- ❖ 한편, 식품 첨가물과 더불어 중국은 분유 파동 이후, 영유아 제품의 식품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조제분유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분유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검역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중국 내 분유유통이 가능함. 또한 해당 분유 제품에 대한 조제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효능 기재를 엄금하고 있음. 수입 제품도 제품 등록 제도를 반드시 준수, 수출 전에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마. 떡, 떡볶이 등 수분 함유량이 많은 제품,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기준치 주의필요

- ❖ 지난 2016년 1월~12월 한국산 떡, 떡볶이는 수입 검역과정에서 총 16건 적발되었음
- ❖ 2016년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나 곰팡이 기준치 초과와 같은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발생함
- ❖ 적발된 떡과 떡볶이 제품은 농산품 가공품으로 식품 첨가물과 같은 성분 기준치 초과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제품 특성상 수분 함유량이 많아 통관검역 미생물 기준치 초과로 문제가 발생함
- ❖ 최근 중국 내 유명 식품 제조사 커디(科迪)에서 제조한 냉동 식품 쑹즈(粽子:종려나무 잎에 찹쌀과 대추 등을 넣어서 찐 것) 제품의 균락총수 수치가 기준치 대비 25배 이상이 검출되어 중국 관리 당국에 규제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식품에 대한 미생물 및 병원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짐
- ❖ 중국 식품 표준 GB 7099-2015에 의거하여, 떡 및 빵 제품의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는 10,000cfu/g 이상이며, 곰팡이 기준치는 150cfu/g 이하임

바. 한국 중국 간의 김 제품에 대한 균락총수 기준이 달라 통관거부문제 발생

- ❖ 지난 2016년 1월~12월 한국산 김은 수입 검역과정에서 47차례 적발되었으며 한국산 외에 대만산과 태국산 제품이 적발되었음
- ❖ 적발된 김 제품들의 사유는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적발된 가운데,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사유로 적발된 제품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함
- ❖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송되거나 소각된 한국산 김은 총 24톤, 반송 건수는 28건(11개 업체)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제품으로 꼽힘
- ❖ 이는 한국에는 김에 대한 균락수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은 1g당 3CFU(집락형성단위)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김 제품 미생물 검사항목 및 기준치(GB19643) ■

항목	기준치
균락수(CFU*/g)	≤30,000
대장균(MPN**/100g)	≤30
곰팡이(CFU/g)(말린 제품)	≤300
병원균	검출 불가

자료출처: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전 위생부)

*CFU: Colony Forming Unit(집락형성단위), **MPN: Most Probable Number(최확수)

사. 총론

- 앞서 중국의 식품 수입통관거부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들어 식품부문에서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준치를 초과로 인한 통관 거부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이러한 식품 통관거부사례의 증가는 최근 사드와 같은 외교 문제에 따라 통관 기준이 강화되어 관행적으로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임
- ❖ 따라서, 국내에서는 민관 차원에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 및 통관거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전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식품 전체 통관거부 중 미생물 기준치 초과가 50.93%로 나타나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대응해야할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음

-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업체 자체적으로 수출 전 식품 검사 등을 통해 미생물 수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중국 현지 무역대표처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수출 등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되는데 적어도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함
- ❖ 이러한 경우 통관검역 과정에서 보관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빠른 통관시간을 요하는 신선냉장 식품의 경우 검역 시점 전에 미생물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유통기한이 촉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정부 관련부처가 개입, 수출품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다음으로, 대 중국 수출상품의 식품위생 관련 안전성 및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함. 식품안전과 관련한 유해물질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ISO, HACCP, GMP 등 관리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함

□ 미생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 식품첨가물 기준치 초과 부분임

- ❖ 중국의 식품유형 분류는 국내에 비해 포괄적인 분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품유형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기준규격은 유해성분들 위주로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는 항목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이 중요함
- ❖ 중국은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에 따라 식품수출 시 통관 절차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통관 항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수출할 중국기업을 통해 현지 통관기관의 기준을 사전에 정보 수집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국내와 중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차이에 따른 수출 부적합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무역 협상을 통해 동등성 협약을 맺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지원도 필요함

- ❖ 식품 유형별 식품첨가물 제도의 비교, DB 식품첨가물 구축 등의 조사 결과를 국내의 식품 수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식문화 및 수출품목이 유사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및 수출 기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주도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단기 -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 일본 정부는 주로 비관세장벽 및 수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다양한 제도 변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궁극적인 해소 및 대응방안수립을 위해 중국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접촉 및 협상 시도로 대응하고 있음
 - ❖ 그 외에, 수출품목 중에는 사전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통관에 문제가 없는 품목인지 확인해야 함. 특히 수산물, 신선 식품의 경우 대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HS 코드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라벨링/포장 등으로 인한 거부사례는 전체 중 9.94%로 나타난 바, 수출업체는 라벨링/포장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샘플 수출 등을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세장벽 해소 또는 우회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현지 수출 컨설팅 업체를 연계해 줌으로써 수출 기업의 전문성을 외부 기관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함
- ❖ 현지 수출 컨설팅 업체는 검역 담당자와 긴밀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통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역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 현지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수출 기업은 수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의 수출법 규제, 통관이 원활한 항구 등 수출지원 업체가 제공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체적인 수출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 주요 품목 식품첨가물 기준치

■ 중국의 음료 제품 식품첨가물 카페인 기준치(GB 2760—2014) ■

항목		최대사용량
탄산음료		0.15g/kg
커피	진한 커피음료	≥200mg/kg
	저카페인 커피음료	≤50mg/kg
차류	홍차	40mg/kg
	녹차	60mg/kg
	우롱차	50mg/kg
	꽃차	40mg/kg
	기타차	40mg/kg

자료출처 :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 식품첨가물 이산화유황 기준치(GB 2760—2014) ■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비고
04.01.01.02	표면 처리를 거친 신선 과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2	건과일류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0.3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2	건조 채소 (건조 감자에 한함)	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3	절인 채소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2.02.04	채소 통조림(죽순, 배추절임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3.02.02	건조 식용균 및 조류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비고
04.03.02.04	식용균 및 조류 통조림 (버섯 통조림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4.01.04	부족류(부족, 유피 등 포함)	0.2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4.05.02.03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5.0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코코아 버터 초콜릿 및 제품 포함) 및 캔디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3.02.01	생습 밀가루 제품(국수, 교자만두피, 훈툰피, 샤오마이피)(생라면에 한함)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06.05.01	식용 전분	0.03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1	설탕	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2	전분당 (과당, 포도당, 맥아당, 일부 전화당 등)	0.04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1.05	조미당액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2.10.02	반고체 복합조미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4.02.01	과채주스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14.02.03	과채주스류 음료	0.05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농축 과채주스는 농축 배수에 따라 환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15.03.01	와인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5.03.03	과실주	0.25g/L	스위트 와인 및 과실주 계열 제품의 최대사용량은 0.4g/L,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15.03.05	맥주 및 맥아음료	0.01	최대사용량은 이산화유황 잔류량으로 계산

자료출처 :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 식품첨가물 아스파탐 기준치(GB 2760—2014) ■

식품분류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01.01.03	인공유	0.6
01.02.02	풍미 발효유	1.0
01.03.02	인공유 분말 및 조제버터 분말	2.0
01.05	휘핑크림(무염버터) 및 유사제품 (01.05.01 휘핑크림 제외)	1.0
01.06.01	비숙성 치즈	1.0
01.06.05	치즈 유사품	1.0
01.07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즉석 풍미 식품 및 사전제조 제품 (아이스크림 및 풍미 발효유 제외)	1.0
02.03	02.02류 이외의 지방 유화 제품, 혼합 및(또는) 조미된 지방 유화 제품 포함	1.0
02.04	지방류 디저트	1.0
03.0	냉동 음료(03.04 식용 얼음 제외)	1.0
04.01.02.01	냉동 과일	2.0
04.01.02.02	건과일류	2.0
04.01.02.03	식초, 기름 또는 소금에 절인 과일	0.3
04.01.02.08	당절임 건조 과일	2.0
04.01.02.09	장식용 과채	1.0
04.01.02.10	과일 간식, 과일맛 액상 간식 포함	1.0
04.01.02.11	발효한 과일 제품	1.0
04.01.02.12	익히거나 기름에 튀긴 과일	1.0
04.02.02.01	냉동 채소	1.0
04.02.02.02	건조 채소	1.0
04.02.02.03	절인 채소	0.3
04.02.02.04	채소 통조림	1.0
04.02.02.05	채소 퓨레(소스), 토마토 소스 제외	1.0
04.03.02.06	기타 가공 식용균 및 조류	1.0
04.05.02	가공 견과 및 씨앗류	0.5
05.01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코코아 버터 초콜릿 및 제품 포함	3.0
05.02.01	껌 베이스 캔디	10.0
05.02.02	껌 베이스 캔디 이외의 기타 캔디	3.0
05.04	장식 캔디(모형이나 케이크 장식용), 상단 장식(비 과일 재료) 및 시럽	1.0
06.06	시리얼, 압축귀리(조각) 포함	1.0
06.09	곡류 및 전분류 디저트(라이스 푸딩, 카사바 푸딩)	1.0

자료출처 :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2016년 통관문제사례 목록

□ 총 161건

□ 농식품 및 농산가공 : 라벨 및 포장 불합격(16건), 기준치 초과(55), 위생(82건), 서류미비(1건), 유통기한 초과(7건)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월	△△뼈건강 & 오메가우유	111.6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뼈건강 & 오메가우유	54.9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저지방우유	54.9	강소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폐기
	△△뼈건강 & 오메가우유	54.9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뼈건강 & 오메가우유	111.6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키드우유	54.9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키드우유	111.6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키드우유	54.9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키드우유	111.6	강소항	식품첨가제 불합격	폐기
	△△평화홍삼차	1.6	산동항	동(銅) 성분 기준치 초과	폐기
	△△△△포도맛젤리	346	강소항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반송
	△△△△분유XO2	19.2	강소항	라벨 불합격	폐기
	△△올라브유 녹차 돌자반	125	강소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 올라브유 녹차 돌자반	185	강소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카페 아메리카노	1.75	상해항	라벨 불합격	폐기
	카페 모카	1.75	상해항	라벨 불합격	폐기
	카페 라떼	1.75	상해항	라벨 불합격	폐기
	△△여주차	3.5	산동항	동(銅) 성분 기준치 초과	폐기
	△△△△ 초콜릿 고체 음료	564	산동항	동(銅) 성분 기준치 초과	반송
	△△△ 알로에	6	상해항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폐기
△△ 딸기우유	14.72	강소항	라벨 불합격	폐기	
2월	△△△△ 초콜릿	890	심천항	식품첨가제 레몬황(檸檬黃) 성분 기준치 초과	반송
	김	725.76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곡물과우더	3840	샤먼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3월	△△△△△마일드	370	북경항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폐기	
	△△△△△마일드	370	북경항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폐기	
	△△△△△마일드	280	북경항	비타민B1,비타민D,비타민A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폐기	
	△△△△△마일드	280	북경항	비타민B1 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폐기	
	△△△△△마일드	280	북경항	비타민D,비타민A함량 국가기준치 미달	폐기	
	△△△△김	96	섬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572.8	섬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매실발효원액	1600	요녕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4월	△△△△ 콘치즈	1234.8	산동항	식품첨가제 AlNaO6Si2기준치 초과	폐기	
	치즈스틱	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고구마스틱	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스틱	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스틱	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 매콤달콤 떡볶이	336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매콤달콤 떡볶이	84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치즈 컵 떡볶이	144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매콤달콤 컵 떡볶이	168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매콤달콤 떡볶이	96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치즈 떡볶이	288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과일맛 시리얼	4200	산동항	수분 기준치 초과	폐기	
	△△△ 키즈김	460.8	요녕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돌자반볶음	120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보너츠	480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 베리넛츠	480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 검은콩 미숫가루	2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5월	△△△전통김	187.9	샤먼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69	광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김	170.5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264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더치커피		20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플레몬차		1392	샤먼항	포장 불합격	반송	
△△△플레몬차		1740	샤먼항	포장 불합격	반송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6월	△△김	108	심천항	균락총수 기본치 초과	반송
	위라이리주	1500	상해항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초과 사용	폐기
7월	인절미아몬드	24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 마카다미아	42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 솔트 호두	45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송
	△△△칼슘PGA	365.15	충청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8월	레몬맛캔디	40	상해항	영양강화제 비타민B2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딸기맛소프트캔디	432	산동항	식품첨가제 아디프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숨사탕	44.93	산동항	식품첨가제 에리트로스인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튀김 스틱	80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안식향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튀김 스틱	16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안식향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 라면	144	산동항	식품첨가제 d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 라면	480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면	280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라면	273.6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김치△△△	198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초코바	68	상해항	식품첨가제 홍화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다△△	558.72	산동항	식품첨가제 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다△△	108	산동항	식품첨가제 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다△△	139.68	산동항	식품첨가제 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다△△	466	산동항	식품첨가제 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다△△	270	산동항	식품첨가제 L(+)-주석산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마△△△	183.74	산동항	수분기준치초과	폐기
	마△△△	316.8	산동항	수분기준치초과	폐기
	△△파이	245.52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매운맛 김자반	80	북경항	대장균기준치초과	폐기
	△△△ 도시락김	45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참맛김	805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3480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1312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한식조미김	175.5	산동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한식김	183	산동항	1. 대장균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한식김	157.5	산동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구운 조미김	109.2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매운 조미김	5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한식김	174	산동항	1. 대장균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맛김	108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 맛김	127.01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 김	214.27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김	214.27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볶은 김	834.4	산동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미니김	3727.8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5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구이김	147.45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구이김	288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미니김	4451.4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볶은 김	600	산동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 구이김	582.912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미니김	4171.5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김	21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볶은 김	732.2	산동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송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 올리브유 김	207.36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김	600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미원	63	산동항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유자효(酵)차	50	상해항	영양강화제 비타민B2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김자반볶음	10	산동항	비소 기준치 초과	폐기
	김자반볶음	10	산동항	비소 기준치 초과	폐기
	마, 퀴노아, 호박, 옥수수 가루	3060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포장 음용수	5670	산동항	비소 기준치 초과	반송
	스파크링 음용수	10	북경항	라벨 불합격	폐기
	포도맛 스파크링(탄산음료)	2250	산동항	효모균 기준치 초과	폐기
	포도맛 스파크링(탄산음료)	1875	산동항	1.효모균 기준치 초과 2.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 포도 음료	240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아질산나트륨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막걸리	27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막걸리	90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막걸리	360	산동항	식품첨가제 아스파탐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9월	△△홍삼캔디	480	산동항	1.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2.대장균 기준치 초과	폐기
	아침 잡곡가루	18.9	산동항	곰팡이 기준치 초과	폐기
	떡	425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쌀떡	425	산동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구운김	35.6	사면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차음료	136	산동항	식품첨가제 가베인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차음료	129.2	산동항	식품첨가제 가베인 첨가량 기준치 초과	반송

발생일자	상품명	중량(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0월	레몬맛 캔디	10.8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캔디	12.6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라테 스톤 초콜릿	8.64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떡 딸기맛	4.7	산둥항	곰팡이 낫	폐기
	떡 연근맛	4.7	산둥항	곰팡이 낫	폐기
	떡 호박맛	4.7	산둥항	곰팡이 낫	폐기
	떡 초콜릿맛	4.7	산둥항	곰팡이 낫	폐기
	△△ 아몬드 빼빼로	129.024	해남항	라벨 불합격	반송
	초콜릿 과자	1.8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닭다리형 과자	2.28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김	28	닝보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효소분말	173	광둥항	대장균 기준치 초과	폐기
	전두유	49920	사천항	라벨 불합격	폐기/ 반송
11월	△△ 요거트맛 캔디	2.3	상해항	영양강화제 비타민D3 첨가량 기준치 초과	폐기
	초콜릿 카라멜맛 초콜릿 바	9.07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초콜릿 땅콩맛 초콜릿 바	9.07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떡볶이(141g)	420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떡볶이(280g)	840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떡볶이(140g)	466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떡볶이(280g)	840	안휘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폐기
	사과맛 현미볼	16.8	상해항	1.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2.대장균 기준치 초과	폐기
	식사 대용 제품	9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식사 대용 제품	7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식사 대용 제품	9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식사 대용 제품	9	상해항	유통기한 초과	폐기	
12월	한국 쌀	19995	광서항	화물과 증서 불일치	반송
	△△△ 탕자나무뿌리면	310	절강항	1. 산가 기준 초과 2. 카르보닐 기준치 초과	폐기
	꿀 옥수수 과자	1.8	광둥항	라벨 불합격	폐기
	김	725.76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조미김	161.64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 조미김	236.88	심천항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사과즙 음료	324	광둥항	영양 강화제 비타민 B6 및 니코틴산 한도 초과 사용	폐기	

자료출처 :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

원본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12/t20141216_1168256.html

제 6 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제 1 절

애로사항 해소사례(aT지원)

No.	제목	지역	중국(칭다오)
		품목	제과류
1	중국 라벨링, 수출자등록 등 통관 지원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소,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의 검역 규제성분 및 함유량 규정을 알지 못해 통관시 중국 해관 폐기 및 반송 리스크가 비관세장벽으로 내재 ○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3개 상표의 중국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유사상표 존재 등의 사유로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자문) 식품에 함유된 원료, 첨가제 등이 중국 식품위생법에 맞는지 중국 수출절차 자문 및 제품·라벨 사전검토 지원 ○ (라벨링 현지화) 중국 식품안전법 66조에 부합하는 라벨링 제작 및 중국 검역총국(CIQ) 수출자등록 지원 ○ (공동물류지원) 칭다오aT물류센터 지원 냉장물류시스템을 통해 통관절차, 재고관리, 내륙물류 업무 등 현지화사업 연계 지원 ○ (상표권 지원) '17년도부터 유사상표 조사, 중국용 상표 번역 및 의견제시 등 상표권 출원 지원체계 마련 	
aT 지원	<p><참고> 한국경제 현지화사업 성공사례 보도</p>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2.) 시험통관을 위한 첫 샘플용 물량 중국 송부 ○ ('17.) 중국 호남성 1호점 개점 예정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의 교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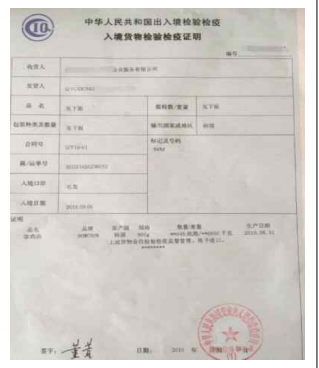

No.	제목	통관 및 제품 사전검토, 라벨제작 등 성공적인 대중국 최초 쌀 수출 지원	지역	중국(상하이)
			품목	쌀, 삼계탕, 김치

업체 애로사항

- 쌀, 삼계탕, 김치 등 2016년도 對중국 최초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규정 등의 정보 부족
- 수출관련 정보 및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 필요

aT 지원

- (현지화 자문) 첫 수출품목에 대한 순조로운 통관 지원
 - 중국 수입식품규격(GB규정), 위생검역표준, 품질요구표준 등 수입통관 사전검토, 포장설계 및 검토
 - 성분분석 등 수입 검역·검사 기준 검토
 - 통관 당국 위생증 발급 및 라벨 등록 등 신속한 통관 협조
 - AQSIQ 시스템 생산공장 및 수출자등록 지원

 <p>최초 쌀수출 6개품목 검사검역증서</p>	 <p>최초 삼계탕 통관 검사검역증서</p>	 <p>최초 김치6개 품목 통관 검사검역증서</p>
--	--	---

결과

- 2016 aT상하이지사 중국 초도수출 지원
 - ☞ 對중국 수출업체 쌀 720천불 직접수출 지원
 - ☞ 對중국 수출업체 삼계탕 252천불 직접수출 지원
- 통관 사전검토 및 라벨, 수출자 등록 지원을 통한 중국 해관 반송 및 폐기 리스크 해소

No. 3	제목	기능성식품의 중국 일반식품 등록 지원을 통한 통관비용 및 시간 단축	지역	중국(상하이)												
			품목	건강기능식품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CFDA 기능성식품 등록 추진시 통관비용 및 시간 과다소요 ○ 일반식품, 신자원식품, 보건식품의 식품분류기준과 원료성분, 함유량 등 한-중 식품표준기준이 달라 기능성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사전확인 필요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식품, 보건식품 등 식품분류기준에 따른 관세율, 증치세율 등 - 신청품목 내 일부 성분과 함유량 등 조정 권고 *일반식품 수출시 기준 및 건강식품 수출시 기준 상이 *중국 식품규정에 없는 일부 식품원료를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성분으로 조정 권고 - 성분분석 등 수입 검역·검사 기준 검토 *균 제한량, 농약최대잔류량, 오염물 제한량, 식품병원균 제한 등 - 원판 및 증문판 영양성적서 정리 및 번역 - 일반식품으로 수출시의 외포장표기 문구 검토 *다이어트 등 기능강조 또는 암시, 제품섭취량 제한 불가 규정 등 *증문 라벨표기 폰트 제한규정 등 - 특정 제품군의 중국내 소비량, 시장규모, 시장전망 등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함유량 조정 권고를 통해 통관비용 및 시간 절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th> <th style="width: 25%;">보건식품</th> <th style="width: 25%;">일반식품</th> <th style="width: 30%;">절감효과(추정)</th> </tr> </thead> <tbody> <tr> <td>평균 소요시간</td> <td>3년</td> <td>3주</td> <td>2년 11개월</td> </tr> <tr> <td>평균 소요비용</td> <td>10,000만원</td> <td>100만원</td> <td>9천 9백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포장 표기 문구규정 검토를 통한 통관거부 사전 대응 				보건식품	일반식품	절감효과(추정)	평균 소요시간	3년	3주	2년 11개월	평균 소요비용	10,000만원	100만원	9천 9백만원
	보건식품	일반식품	절감효과(추정)													
평균 소요시간	3년	3주	2년 11개월													
평균 소요비용	10,000만원	100만원	9천 9백만원													

No.	제목	지역	중국(베이징)
4		중국 선점 상표권 사전조사 및 출원 법률자문을 통한 피해사례 미연 방지	일반
업 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식품업체의 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중국 상표권 전문 브로커 출연 등으로 업체 피해사례 증가 ○ 한국어(영문) 상표의 중문 번역 및 CI 중복성 판단기준 등 한국과 다른 중국 상표제도 때문에 수출업체 혼란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표권 등록 프로세스 및 비용 등 관련 절차 안내 - 수출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중국 상표국에 이미 등록 되어있거나 등록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사전조사 - 상표권 중문 번역 및 CI(이미지 파일) 등 유사상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상표권 구성(결합형, 중문형, 영문형, 그림형 등) 및 신청 분류 조언 *중국 상표권 구성형태 : 그림(CI, 도형, 한글), 중문, 영문, 결합 *중국 상표권 분류 예시 : 제 29, 30류(식품), 35류(판매대행업), 43류(요식업) 등 ○ (현지 상표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삼계탕 수출업체에 한하여 상표권 출원 시범 지원 - 2017년부터 상표권 출원 지원사업 개시로 수출업체의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지원체계 구축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유사상표 등록여부 유무 파악을 통해 상표 중복위험 해소 ○ 상표권 등록을 통해 중국 수출 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보 		

수출애로 및 건의사항

No.	제목	해당국가	중국
1	한국 스낵/과자 수입애로	관련품목	스낵/과자류
		유 형*	기타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 중저가 브랜드로 포지셔닝하여 불법·편법 통관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일부 조선족이나 한족 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제조업체, 도매시장, 무적 시장에서 식품을 저가로 매입해 중국으로 불법·편법 통관함으로써 수출제품 가격이 국내에서 팔던 제품보다 더 싸게 판매되는 문제로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스낵/과자의 전체적인 가격인하 초래 ○ (해결방안) 정부에서 이러한 불법·편법 유통업체에 대한 업체 파악, 검증, 차단 등 제제가 필요하며, 정상 유통·통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No.	제목	해당국가	중국
2	대형매장 진입 애로	관련품목	스낵/과자류
		유 형*	기타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 대형매장 등 메인시장 진입시, 고비용·저효율 구조(과도한 리베이트, 불합리한 결제구조로 인한 자금 회전을 저하 등)로 인해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해결방안) 대형매장 단위 한국식품관측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측지원 필요 		

No.	제목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확보 필요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스낵/과자류
			유 형*	기타
3				
에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로)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선 주요 거점도시 내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확보를 통해 중국 내 대형 유통업체 거래선 공략 필요 ○ (해결방안) 이중 초기 물량은 공동물류센터 등 정부지원 물류서비스 활용하면 현지 유통법인 없이도 재고를 보유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재고 보관이 가능 			

No.	제목	김 세균 안전성 강화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김
			유 형*	검역
4				
에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 김제품의 세균이 중국 제한치를 크게 초과하는 사례 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월 성경식품 등 회사의 김제품(약1,000kg), 중국 심 천항 shipback, 수입자:월마트 - 2016년 3월 海世김(약 670kg, 2만달러) 중국 산서항 shipback ○ (건의) 수출 전 사전검사 또는 소량 샘플 수출 진행 추천 			
기타 (관련업체, 관련규정 등)	○ GB/T 23596-2009 김			

No.	제목	유자차 함량표기 기준 미비에 따른 애로	해당국가	중국
5			관련품목	유자차
			유 형*	수출일반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유자차의 경우, 회사별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없이 외부 포장에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농협(유자과육 35%), 전남(유자 48%, 당절임으로 추정), 국제(유자액, 수치 미표기) ※ 당절임 50%의 경우 유자과육 25%+설탕 25% ※ 농협의 경우 과육 35%이므로 당절임 65% ○ (애로) 회사별 표기사항 상이 및 불분명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기사항으로 인한 오해로 전남 유자차 대비 농협 유자차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 초래 - 농협의 경우에도 유자 함량을 낮추고 함량 표기부분을 변경하여(기존 유자과육 → 유자 또는 유자액) 낮은 가격으로 ○ (건의) 유자차 성분 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정확히 제품에 대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No.	제목	인삼절편의 수입통관 애로 사항	해당국가	중국
6			관련품목	인삼류
			유 형*	검역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인삼절편의 경우 중국 국가표준(GB)의 부재로 최근 수입통관 거부 사례가 늘고 있음 ○ (애로) 현 중국 국가표준 중 인삼절편에 적용이 가능한 국가표준으로 “절편”이 있으나 “과일 혹은 채소”에만 국한되어 인삼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표준 중 농업 표준 인삼제품 중에 인삼절편이 있으나 신선 인삼을 잘라 “꿀”에 절여 완성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현 국산 제품 중 꿀이 아닌 “설탕 또는 과당” 등이 첨가된 제품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생 검역표준인 “절편”부류로 포괄적 적용 불가(과일, 채소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 (건의) 인삼절편의 포괄적인 기준 적용 요청 			
기타 (관련업체, 관련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표준(GB) 			

No. 7	제목 쌀 수분 함량 중국 표준 초과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쌀
		유 형*	검역
에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쌀의 수분 요구는 16%이하인데 반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쌀 GB1354-2009]에 따라 중국 중단립쌀 수분 요구가 ≤15.5%임 ○ (건의) 쌀수분에 대한 한·중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수분 초과한 쌀에 대한 건조 조치를 통해 통관 잠재 리스크 해소 필요 		
기타 (관련업체, 관련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쌀 GB1354-2009 		

No. 8	제목 쌀 공급 안정성 및 품질관리 강화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쌀
		유 형*	안전성
에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쌀 대 중국 수출과정에서의 혼중제 필수 사용에 따라 도정후 바로 포장되지 않고 일정 기간 소요, 일부 쌀에서 냄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 잦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햅쌀 등의 바이어에서 요청하는 쌀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추후 꾸준한 수입 및 마케팅에 리스크가 큰 편 		
기타 (관련업체, 관련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태상/용양흥(바이어/마케팅) - 이천쌀 수입 		

No. 9	제목 싸드 등 정치이슈로 인한 한국제품 판매 압력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홍삼
		유 형*	수출일반
에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드 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로 홍삼제품 흡쇼핑 판매 방영건도 최종심사에서 한국상품 판매 하지 말라는 무언의 정부 압박으로 취소, 해관에 한국에서 도착하는 물건들을 까다롭게 검사하라는 내부 지령이 있다는 얘기도 들림 ○ 정부차원의 협의 및 교류를 통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필요 		
기타 (관련업체, 관련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진제약(홍삼수출업체) 		

aT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 ❖ 지원 시기 : 연중 수시
- ❖ 서비스 대상국 18개국
 - (동아시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 (동남아) 동남아(베트남, 인니, 말련, 태국, 인도 등)
 - (기타) 중동(UAE),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등)
- ❖ 지원 내용
 - 수입국 현지 전문기관이 비관세장벽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 지원

지원 사업	지원비율	지원한도	세부 지원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자문	전액	최대 10회 & 10백만원	○ 수입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자문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지원(자문)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률</td> <td>•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td> </tr> <tr> <td>통관</td> <td>•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td> </tr> <tr> <td>관세</td> <td>•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td> </tr> <tr> <td>SPS</td> <td>•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td> </tr> <tr> <td>기타</td> <td>•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	• 계약서 작성,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통관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관세	•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SPS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 식품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정보 등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라벨링* 지원	90%	10백만원	○ 각국 식품법령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제작 *사전 샘플 검역·검사 지원												
상표권* 지원	90%	10백만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및 출원지원 - 유사상표 조사 후 현지 상표국 출원 지원												

※ 수산의 경우는 70% 지원

- ❖ 신청방법
 - On-line 신청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무역통계제공정보 동의서 등

2016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 기획 및 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발행일 201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3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2016년
중국 농식품
무역장벽보고서

